

수시연구 2013-05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2013. 12.

장홍석 · 한덕훈 · 마창모 · 장춘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장 홍 석: 제1장, 제2장, 제3~4장 일부, 제5장

● 연구진

- 한 덕 훈: 제3장
- 마 창 모: 제2장
- 장 춘 봉: 제4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장 영 수(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학장)

● 구 도 형(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김 정 봉(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머 리 말

FAO와 OECD는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2021년까지 약 2,300만 톤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수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과 수요시장을 누가, 어떤 수산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수산물 공급구조는 내수 중심, 영세한 생산주체, 수출상대국의 편중성(수산물 수출의 거의 절반이 일본에 의존) 등에 의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산분야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정책, 10대 수출 전략품목과 같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이미 수립하여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기대효과는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지금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선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글로벌 수산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는 30kg를 넘어버렸다. 비록 우리의 60~70%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국가인 셈이다. 게다가 향후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초과수요 2,300만 톤 중에서 700만 톤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대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시장을 중·단기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산시장의 확대는 수산물의 교역 물동량을 늘리게 되며, 우리의 수산분야는 동북아 수산물류(주로, 보관물류)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장점을 살려 중국을 타깃으

로 한 수산물류허브를 육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제안에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내외 글로벌 수산기업이 우리나라의 특정 구역에 집적되어 수산물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수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의 선진적인 경영·기술 노하우를 국내에 이전하게 되면서 우리 수산기업의 역량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의 장홍석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한덕훈 전문연구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장춘봉 위촉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서 부경대 수산과학대학장인 장영수 교수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의 구도형 사무관이 본 연구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필자들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우리의 수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성 귀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와 내용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1) 문헌 및 자료 조사	7
2) 현장조사	8
3) 전문가 자문	8
4) SWOT 분석	9
5) 시나리오 분석	9
4. 선행연구 검토	9
1) 수산분야 관련 선행연구	10
2) 농업분야 관련 선행연구	11
3) 기타 분야의 선행연구	13

제2장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개념과 필요성	17
--------------------------------	----

1. 개념	17
2. 대내외 여건 변화	21
1) 대내여건의 변화	21

2) 대내여건 변화	36
3. 필요성	49
1) SWOT 분석	49
2) 기대 효과	51

제3장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54

1.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분석	54
1) 현행법 분석	54
2) 시사점	63
2. 식품산업진흥법 검토 및 분석	64
1) 법의 목적	64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지원 육성	68
3)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법 제19조의2)	68
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법 제19조의4)	69
5)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69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검토 및 분석	70
1) 법의 목적	70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등(제15조)	74
3) 세제 및 자금 지원(제16조)	74
4) 타 법률의 적용 배제(제17조)	75
5)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제5장)	75
6) 소결	76
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검토 및 분석	76
5. 소결	78
1) 각 법의 적용 대상	78
2) 관련 제도의 개선	79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 82

1. 국내 주요 사례 83
 - 1) 지역농업 클러스터 83
 - 2)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 85
 - 3)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91
2. 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사례 97
 - 1) 덴마크·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97
 -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98
 - 3) 중국 보세구 사례 101
3. 시사점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08

1. 결론 108
2. 정책 제언 114
 - 1) 정책 연구와 투자유치 계획 114
 - 2) 관련법 제도의 상호 활용 115
 - 3) 제도 개선 118
 - 4) 일괄 행정 서비스 체제 120

참 고 문 헌 ————— 122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15
표 2-1. 클러스터와 단순 산업단지(공단)의 개념 차이	19
표 2-2. 동북아 수산물 생산량 추이	23
표 2-3. 동북아 양식수산물 생산추이	24
표 2-4. 세계 및 동북아 수산물 생산 전망 추이	25
표 2-5. 동북아 수산물 교역량 추이	27
표 2-6. 동북아 수산물 교역량 전망 추이	29
표 2-7. 동북아 수산물 소비 전망	32
표 2-8. 동북아 수산물 소비 시장 규모 추정	32
표 2-9. 일본의 수산물 수급 관련 현황	38
표 2-10. 러시아의 국가별 냉동명태 수출량 추이	40
표 2-11. 러시아 명태의 국가별 수출가격	40
표 2-12. 한국의 대중국 수출 수산물 현황	41
표 2-13. 환넵치의 수출 추이	45
표 2-14. 우리나라 냉동냉장창고 현황(2010년말 현재)	46
표 2-15. 중국의 수산물 교역 전망(FAO)	52
표 2-16. 시나리오별 대중 수출 실적 전망	52
표 2-17. 시나리오별 대중 수출 실적에 따른 한국의 수산물 수출 개선(2017년 기준) ..	53
표 2-18.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에 따른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2017년 기준) ...	53
표 2-19.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에 따른 수산가공업의 일자리 창출 개선(2017년 기준) ..	53
표 3-1.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관련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80
표 4-1. 국내기업 인센티브	88
표 4-2.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 인센티브	88
표 4-3. 입지 및 투자 보조금 지원기준	89
표 4-4. 식품산업단지 내 특화단지별 정책적 지원내용	90
표 4-5. 단지 내 주요 시설	93

표 4-6. 가공공장종류별 생산품목	95
표 4-7. 주체별 관리 내용	95
표 4-8. 칭다오 보세구 기본 정책	101
표 4-9. 칭다오 보세구역별 정책 비교	103
표 4-10. 다롄 보세구역별 일반 개요	104
표 4-11. 다롄 보세구역별 인센티브(세금정책) 현황	105
표 5-1.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대상 지역	112
표 5-2.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에 따른 정책용역 및 투자유치단 일정계획	115
표 5-3.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제도간의 주요특징 비교	117
표 5-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선 방향	11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6
그림 2-1. 클러스터, 단순산업단지, 허브의 관계	20
그림 2-2. 중국의 수산물 소비 추이(kg/인/연)	31
그림 2-3. 동북아의 수산업 분업화에 따른 교역도	34
그림 2-4.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물류의 변화	35
그림 2-5.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의존도	37
그림 2-6. 감천항 원양단지 내 냉동냉장창고단지의 역사적 사업 추진 과정	48
그림 2-7. 감천항 냉동냉장단지의 포지셔닝 변화	49
그림 2-8.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한 SWOT 분석	51
그림 5-1.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 제도의 관계	111
그림 5-2.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제도의 연관성	111
그림 5-3. 관련 정책간의 성과 흐름도	113
그림 5-4. 관련 제도의 일괄정책화와 행정 서비스	120

Executive Summary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1. Purpose

- For more active fisheries export and larger global fisheries market, Korea needs short- and mid- term policies which could supplement the established long-term plans. This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 To analyze relevant domestic policies and system
- To examine food cluster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To conduct the SWOT analysi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fisheries export

2) Feature

- The study reviewed relevant institutions and cases for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imed for fisheries trade expansion in the region. Based on the results, it proposed possible application cases of the current system and its improvements.

3. Results

1) Summary

- The study cleared concep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its introduction. It also showed needs for its foundation and macroscopic positioning.
- It secured policy connection with the conventional policies for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nd compared related systems to induce their improvements for inviting more companies
 - In order to draw improvement points, the study examined *The Free Trade Zone Act*,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nomic Free Trade Zones*,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The study compared similar cases as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t home and abroad to find systematic incentives, policies and their possible applications
 - It reviewed local agricultural clusters, national food clusters and Kamchun International Fisheries Logistics Base in Korea while analyzing Öresund Food Cluster (Denmark-Sweden), Emilia Romagna Cluster (Italy) and bonded areas of China (Qingdao and Dalian) to induce implications for Korea.
- The analysi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helped to set the basic direction and based on it the study suggested policy direction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 (Policy research and investment attraction plans): In addition to institu

tional reviews, the government needs to confirm the main demand and prepar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groups, investment attraction manuals and investment briefing sessions along with other policy research.

- (Reciprocal utilization between laws and system): Support from relevant Ministries should have legal connectivity for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Such connectivity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administrative system and organization en block.
-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needs to emphasize rol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le the established policies and incentives should be utilized enough. For uniqueness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to be well use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needs to refer to things for the hub.
- In case of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 system for administrative service en block is necessary for local and foreign residents in the area.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proposed system improv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hub, laying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etting policy direction as well as implementing policy direction.

3) Expected benefits

- Its review on relevant systems will help to overcome limitations of Korea's fisheries export structure in securing export volume and finding new markets.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1990년대 한국은 감천항 동편에 원양기지화를 위한 냉동냉장창고 단지를 구축하면서 일본 시장을 겨냥한 수산가공원료 및 최종소비재를 보관·환적하는 동북아 수산물물류국의 아성을 구축했다. 이는 1980년대에 성립된 일본의 거대 소비지(도쿄, 오사카 등)에 입지한 냉동냉장창고 물류단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결국 일본의 냉동냉장창고들은 내수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다.¹⁾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국내 수입수산물 증가와 중국 연안지역 수산가공단지의 성장은 1990년대 한국의 동북아 수산물류 허브로서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동북아 수산물류의 핵심 산업이던 냉동냉장창고(주로, 감천항의 냉동냉장창고)는 수도권 등의 내수형 냉동냉장창고들과의 경합 관계에 들어서 있다.²⁾ 즉, 동북아 수산물류의 허브였던 한국의 냉동냉장창고산업은 내수보관사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산물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동력원을 상실할 기로에 서 있다.

한편,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은 단순한 상품 교역구조는 글로벌 분업화 구조로 전환되면서 수산물의 최종소비재를 창출하는 과정에 국제 물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2년 OECD와 FAO는 공동으로 2021년 세

1) 장홍석(2004), 「日本も冷凍冷蔵倉庫産業の構再編と経営行動に関する研究」, 박사논문, 홋카이도대학, 2004. 3.

2) 장홍석 외(2008),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냉동냉장업의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 6.

계 수산물 생산량이 현재(09~11년 평균)보다 약 30%(2,300만 톤) 늘어나면서 교역량도 이와 동반하여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³⁾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의 수산물 교역량은⁴⁾ 2011년 2,900만 톤에서 2021년에는 3,800만 톤으로 32%가 늘어나고, 이는 세계 평균 증가율인 27%에 비해 5%p 많다.

한편, 중국의 수산물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인구를 감안해 본다면 세계 유수의 수산식품기업들의 미래 각축장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는 23kg/연에서 31kg까지 34.8% 늘었다. 중국의 인구를 13억 명으로 가늠해도 동 기간에 걸쳐 1,040만 톤이 늘어난 셈이고, OECD-FAO(2012)에서는 2021년에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는 37kg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약 800만 톤의 수산물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에 따라서 양식어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연해부에서의 양식량 증가도 여의치 않은 형세다. 즉 국내 생산만으로는 중국의 수산물 소비를 충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수산가공국인 중국은 수산가공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외적으로 글로벌 수산물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수산물 시장 확대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수출여력은 충분한 지에 대한 대내적인 수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수산물 수급은 이미 2002년부터 수입의존형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반해 수출은 여전히 일본, 중국, 미국, 태국 시장에 80% 정도를 의존하

3) OECD-FAO(2012), *Agricultural Outlook*, OECD-FAO, 2012.

4)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 등 9개국 기준.

고 있다. 대일 수출은 전형적인 최종소비재 수출로 활어 수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과 태국으로는 가공원료, 미국으로는 한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우리의 수산물 수출은 시장개척을 통한 직접수출이 아닌 상대국의 바이어가 찾아오는 간접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이 여의치 않다.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의 생산업자가 대부분 영세하여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의 수출중계업자(유통업자)에 의한 수집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영세성은 시장개척, 가격경쟁, 탐색비용(매물, 비용) 등과 같이 전방위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환율이나 국제 수산물 가격 변동 요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을 위한 물량 확보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산물의 내수 시장이 발달하여 정책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내수 안정화를 위한 물량과 수출 확대를 위한 물량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수산물 수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특히,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 증대와 중국 수산물 시장의 성장이라는 대외적 수출 여건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수출 구조의 한계는 근간적으로 우리 수산정책에서 내수 정책과 수출 정책 양자를 모두 선택해야 하는 과제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비슷했던 1990년대 말에 수입 의존형 내수시장을 정책적으로 선택하면서 “수산물의 안정 공급”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와는 반대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을 위한 목표(2020년 100억 달러)를 위한 수산식품클러스터와 10대 수출전략품목 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수출 정책을 보면, 2020년까지 클러스터 정책이 다음의 한계를 과연 극복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첫째,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국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둘

째, 과연 그 클러스터 주체가 국제시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셋째, 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된 정책들이 향후 6~7년 내에 충분한 수출 원료 공급, 관련 R&D의 개발과 산업화 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정부의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전 수산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수산물 수출의 대외여건이 그렇게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는 점과 정책의 집행과 시행으로 인해 그 결과가 수산물 수출 목표 연도에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타 산업에서는 자유경제구역, 산업공단, 항만 배후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통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의 수산물 수출과 연계된 클러스터 정책은 경쟁력이 낮은 주체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하여 수출 전선에 내놓을 생각이다. 후자는 전자보다 한 단계가 많으며, 장기에 걸친 꾸준한 정책 지원을 요구한다.

정리하자면, 수산물 수출의 대외 여건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가 열악한 가운데 정부는 2020년까지 100억 불 수산물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클러스터 정책 등을 내놓았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산물 수출이나 우리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 산업과 같이 국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생산자의 유치를 통해 수산물 수출물량과 주체의 경쟁력을 중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의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을 위해 수산관련 인프라 및 기술력(품질 등)이 있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다면, 내수물량과의 충돌 없이 수산물 수출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동북아 수산물류의 선두주자였던 우리의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늘어날 수산물 교역량에 따른

물류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글로벌 수산시장 성장을 기반으로 기존의 장기적인 정책을 보완하는 중단기적인 수출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반으로부터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우리의 수산물 수출 구조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수출 물량 확보, 적극적 시장 개척, 사업주체의 노하우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 증대(특히, 중국)를 겨냥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성, 관련제도 검토,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연구과제의 특성상⁵⁾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대한 개념, 포지셔닝,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수행하는 기초 연구이다. 또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통한 우리 수산물 수출 대상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며, 일부 동북아 및 동북아 인접국의 현황을 참고한다.

5) 동 연구는 KMI의 수시과제(단기연구)로서 시간과 비용적 제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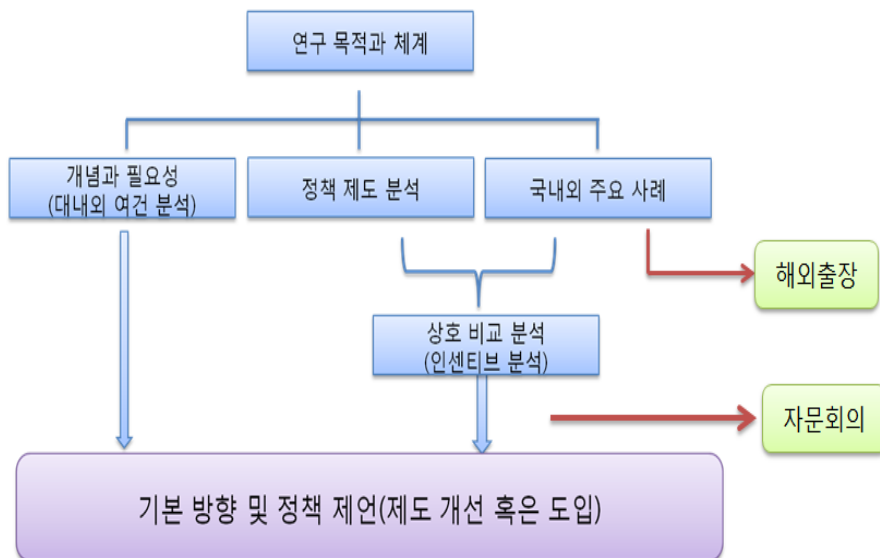
제도적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경제구역과 관련한 제도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하며, 일부 관련 제도와 비교를 수행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을 비교한다.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주요 대상기업분야는 수산물 생산자, 수산식품가공기업, 수산물 유통 및 물류관련 기업 등이 포함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선행연구 고찰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제2장은 개념 정리, 관련 대내외적인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도입 필요성과 거시적 Positioning을 도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 그림 1-1 | 연구의 흐름

제3장은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기존 정책의 보완적 정책인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하는 정책인지를 명확히 한다. 동시에 관련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허브 구축에 따른 기업 유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도출한다.

제4장은 국내외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제도적 인센티브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우선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혹은 보완)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중단기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유수의 수산식품기업과 관련분야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조사, SWOT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1) 문헌 및 자료 조사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헌조사는 수산분야에서의 클러스터 관련 연구와 타산업 분야의 허브 구축 관련 연구와 제도 관련 문헌을 참고했다.⁶⁾

자료 조사와 관련해서, 글로벌 수산물 생산 및 교역 전망과 관련해서

6) 문헌연구는 뒤에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는 OECD-FAO(2012)의 전망치를 인용하였고, 이들 전망치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해석을 적용했다. 이 외에 글로벌 수산물 생산 통계 등은 FAO의⁷⁾ 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내 자료와 관련해서 수산물 생산은 통계청의 어업생산통계와⁸⁾ 수산정보포털을⁹⁾ 주로 사용하였다.

2)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는 국내외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유사한 사례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대상으로 한다. 해외 현장조사는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연해부를 중심으로 보세구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와 관련한 중국의 정책 및 제도를 현장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국내는 기존의 항만 배후부지 개발 및 지원 사례, 기존의 농수산식품 관련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전문가 자문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 관련 전문가와 연구 관련 전문가로부터 직접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정책 관련 전문가의 경우에는 기존의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관련 정책에 대한 현황과 애로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받는다. 연구 관련 전문가로부터는 글로벌 수산물 교역 현황과 전망, 특히, 동북아 수산물류의 실태와 동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도입 필요성을 확보한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예산 상의 한계로 연구기간 동안 3회를 실시하며, 여기에 착수보고와 최종보고가 포함된다.

7) FAO(www.fao.org), FAO, Fishstat J.

8)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활용.

9)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4) SWOT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필요성을 방법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적인 정성적 전략 구성에 사용되는 SWOT 분석을 사용한다. SWOT 분석의 대상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여건 분석이다.

SWOT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관련정책(클러스터)에 포함되지 못한 대내외 수산물 수출 여건을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적용토록 한다.

5) 시나리오 분석

본 연구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성에 대한 제도와 사례 검토를 하는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에 준하는 연구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허브의 구성에 있어서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동 허브가 지향하는 목표가 수치적으로 일정 수준은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로서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높은 수치를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 수산물류 허브 구성에 따라서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량 확보를 시나리오로 도입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증대 효과, 수산가공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추정이 가능하다.

4. 선행연구 검토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수산분야에서는 흔히 않았던 개념이다. 따라서 수산분야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드물다. 그러나 농업이나

수산업을 제외한 일반 2차 산업이나 물류산업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감천항 원양단지와 같은 산업집적화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부지 확보와 저리용자 정책의 두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원양어업기업과 냉동냉장창고들을 입지시키는 정책에 머물렀다. 농수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에서의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지대, 항만 배후 부지 활성화 정책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수산업에서는 영세한 생산자들을 산업적으로 한 데 묶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클러스터 개념을 정책에 포함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산업의 클러스터와 관련된 문헌, 타산업의 관련 연구 등 각 산업분야에 대표적인 연구를 고찰한다.

1) 수산분야 관련 선행연구

2008년부터 수산업과 관련된 클러스터 정책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글로벌 진출보다는 국내적인 클러스터화에 연구와 정책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유사한 개념의 연구는 정책연구의 수준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한 연구는 이러한 수산분야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홍석 외(2008)는¹⁰⁾ 우리나라 수산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냉동냉장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수산물류허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동북아 수산물류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 냉동냉장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수산물류허브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부지에 냉동냉장창고단

10) 장홍석 외(2008),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냉동냉장업의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 6.

지를 조성하여 환적물량 유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동북아 수산물류 허브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생산자나 수산가공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성애 외(2008)는¹¹⁾ 수산분야의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한 문헌이다. 이 연구에서는 클러스터의 개념을 “수산업 클러스터는 특정 수산업 분야와 상호 연계된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연합을 이뤄 지역적으로 집중된 것을 의미한다.”로¹²⁾ 보고 있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수산분야에 클러스터를 도입하는 이유를 2000년대 들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수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산업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수산업 클러스터를 총 49개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분석하는 변수에 수산물 수출이나 동북아 역량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지역과 관련 어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형태를 규정했다. 또한 국내 수산물 생산자나 관련 주체들이 정책 대상자이다.

2) 농업분야 관련 선행연구

농업과 관련하여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같은 개념의 연구 문헌은 전무한 상태이다. 반면, 유사한 개념으로 농업분야에서도 클러스터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수산분야보다 성숙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¹³⁾ 농업분

11) 최성애·홍현표·마창모(2012), 『수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 2008-15(기본), 2008. 12

12) 최성애 외(2008), Executive Summary.

13) 김정호·박문호·김태연(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12.

김정호·박영범·김연민·정기수·김경환·임성규(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야에서 클러스터 정책이 도입된 시기는 2004년으로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그것이다. 이후 클러스터 연구는 국내의 지역농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클러스터 조성 연구에서 평가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호 외(2004)는¹⁴⁾ 농업 클러스터 기반의 초창기의 정책연구로서 일반 클러스터의 개념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화하였다. 또한 선도적으로 국내 지역특화를 가진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상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클러스터의 정책적 도입을 국내 농업분야에 도입시켰다는 점과 이를 지역적인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 연구이다.

김정호 외(2005)는¹⁵⁾ 2004년부터 실시된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성과 평가 및 그 지표를 개발하며,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정책의 도입 이후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확산을 합리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추진실태 조사』, 농림부, 2005. 12.

김정호·박준기·김영생·이병훈(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농림부, 2005. 12.
민정택·김정호·석현덕(2005),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농림부, 2005. 12.

박문호·한혜성(2005),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하동군농업기술센터, 2005. 12.

박현태·김배성·이용연(2007), 『순창장류 농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구』,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2007. 12.

석현덕·김영단·김현근·김성주·윤범석(2009), 『품목별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산림청, 2009. 12.

박문호·박시현·황의식·김광수·김정호·오형은·정남식(2011), 『상주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상주시, 2011. 12.

박석두·오내원·최지현·김창호(2011),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농림수산식품부, 2011. 2.

이정희·황성혁·조영상·구자성·박인선(201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12.

14) 김정호·박문호·김태연(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6, 2004. 12.

15) 김정호·박영범·김연민·정기수·김경환·임성규(2005),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실태 조사』, 농림부, 2005. 12.

이후,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연구는 지역별·품목별 클러스터 연구에 집중되면서 농업, 임업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연구는 지자체의 정책 연구가 대부분으로서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렇게 현실 정책 도입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던 클러스터 연구는 현실 사업 역시 확산되어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 연구가 이정희 외(2010)이다. 이 연구는 확산되어 가는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수립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지역적·품목적 연대가 있는 기존의 생산자 혹은 기업이 주체를 이루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농업분야 클러스터는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 연구에서는 다른 방향으로서 경쟁력 있는 주체를 유치하는 것도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본 것이다.

3) 기타 분야의 선행연구

수산업과 농업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유사한 개념의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제조업, 물류업, 광업을 비롯하여 금융업 등 거의 모든 사회·경제·문화 분야에서 ‘허브’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허브’라는 개념은 ‘중심지’, ‘중심국가’, ‘거점’ 등과 같은 별도의 용어로서 표현·이해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허브’의 개념은 이 후에서 다룰 예정이며, 여기서는 대표적인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이성우 외(2011)는¹⁶⁾ 광양항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16) 이성우·이주호·김찬호·김근섭·오연선·김성야·김진경(2011), 『광양항 농산물 물류허브 추진전략 연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11. 3.

을 위해 물류산업 측면에서 동북아 농산물 물류허브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광양항 농산물 물류허브에서 취급품목, 비즈니스 모델 유형(수입거점, 수출거점, 재수출거점, 기타 거점),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수출거점’ 비즈니스 모델 도입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 이성우 외(2011)는 농산물이라는 상품적 유사성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가능성을 가늠케 해준과 동시에 재수출 거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거점 구축이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기업, 관련기관 등)에 대한 유치 전략 및 이에 따른 지원방향이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시욱 외(2010)는¹⁷⁾ 정체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 연구이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과 그 적절성을 평가했다.

김학소 외(2008)는¹⁸⁾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오일허브 경쟁력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오일허브 구축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석유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허브의 개념을 비롯하여 허브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의 비교(주로, 경제특구간의 비교)와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현황 및 개선점을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 있어서는 동일선상에서의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연구의 내용이 선행연구로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김학소 외(2007)는 항만의 배후부지를 동북아 물류허브의 주춧돌로 삼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글로벌 항만물류의 허브화에서 항만 배후부지의 이용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동시에

17) 이시욱 외(20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10. 12.

18) 김학소·성숙경·김우선·김운수·이주호 외 17명(2008),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한국석유공사, 2008. 12.

정책적 수단으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이 추세이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항만 배후부지에 대한 정책 접근은 본 연구의 제도개선에서 검토해야 하는 분야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항만 배후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성근 외(2003)는¹⁹⁾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화 정책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지원하는 목표로 관련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가 동 연구에 주는 의의는 물류·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경제특구, 경제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유치)의 현황과 검토를 통해 물류 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 수행연도가 오래된 점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접근법과 대상 제도의 제안은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 표 1-1 |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분야	연구자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차별성
수산	장홍석 외(2008)	냉동냉장업 구조분석과 수요전망 냉동냉장업의 수산물류허브 도입	허브 개념 확대 대상분야 확대 제도 개선 우선
	최성애 외(2008)	수산분야 클러스터 도입과 방향 대상 클러스터 사례	글로벌 진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위한 다분야의 관련 제도 검토

19) 최성근·윤현석·오일환(2003),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법제처, 2003. 9.

| 표 1-1 | 주요 선행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계속)

분야	연구자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차별성
농업	이정희 외(2010)	다수 클러스터 사업의 관리 중앙화 클러스터의 기업유치 강조	글로벌 진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위한 다분야의 관련 제도 검토
	김정호 외(2005)	농업형 지역 클러스터의 평가방법 시범사업 대상의 향후 발전 방향	
	김정호 외(2004)	농업형 지역 클러스터 개념 도입	
기타 분야	이성우 외(2011)	물류산업에 농산물 허브 적용 재수출거점 비즈니스 모델 제언	취급상품의 유사성 지원제도 개선
	이시욱 외(2010)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 제도 평가	제도 개선에 도움 경제자유구역은 부지 대상의 일부
	김학소 외(2008)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관련 지원책의 비교분석	제도 비교 분석 수용
	김학소 외(2007)	항만 배후부지의 자유무역지대화	일부 사업 대상에 포함 검토
	최성근 외(2003)	물류 비즈니스 거점화 관련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방법론 수용 오래된 자료

제 2 장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개념과 필요성

여기서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대한 개념, 필요성, Positioning을 설정하기 위해 동북아의 관련 분야에 대한 대외적인 여건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1. 개념

대내외 수산물 수출여건을 배경으로 동북아 수산물 시장을 주요 타깃 시장(주로, 중국)으로 하여 국내외 유수의 수산식품기업을 산업적 지원체제가 마련된 장소에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1차적으로 모색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가 필요하다.

‘허브(Hub)’라는 의미는 당초에 자전거의 바퀴를 지탱하는 살이 모이는 중심부를 말하며, 이러한 정의에서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허브는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모여서 관련분야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심지를 의미한다. 허브라는 용어는 이와 같은 개념 하에서 산업 외 분야인 에너지, 문화예술, 금융, IT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허브와 곧 잘 비교되는 개념으로 ‘클러스터’가 있다. 이미 검토한 선행 연구에서 관련 문헌 중에 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클러스터의 개념은 E. Porter(1990)에²⁰⁾ 의해 소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연계되어 있는 특정산업 산업분야의 기업과 그에 연

20)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관된 기관들이 서로 상호 이어져 있는 집적체를 클러스터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는 참여자들의 신뢰와 호혜에 기반을 두어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 클러스터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고, 특히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농업분야에서 산업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클러스터는 참여 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이 목표로 하는 시점이 장기적이며, 주체간의 지식·정보, 산업 연계를 하다보니 개별 이익에 대한 갈등 조정에 의해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를 위해 정부(혹은 지자체)의 관심사는 이들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쏠리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 디에고 BT 등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자생적인 의미가 강하다.

한편, 단순 산업집적지(산업공단, 산업단지)라는 개념은 클러스터 개념이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공업용수, 전기 등 산업 인프라 자원, 저렴한 지가 등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기업체 공장 등이 정부정책에 의해 모이는 경우이다. 단순한 산업집적지는 입주기업 간의 연관성보다는 공단에 정책적으로 제공된 산업 인프라 여건이 개별기업들에게 비용절감을 도모한다는 점이 우선한다. 물론, 집적되다 보니 일부 연계성에 의해 이익이 도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주된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

허브를 이러한 클러스터와 단순 산업단지와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사실, 허브의 목표는 해당 분야에서 구심점 혹은 중심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클러스터나 산업단지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면서 점차 관련주체를 모으는 힘이 강화되면 ‘허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브는 허브라는 개념 자체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애초에 해당 허브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나 법을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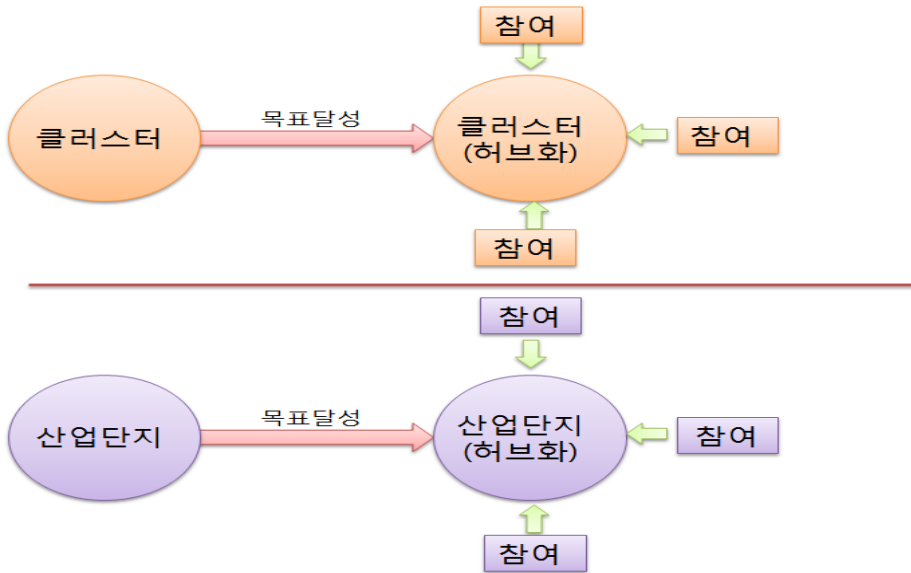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2-1 | 클러스터와 단순 산업단지(공단)의 개념 차이

	클러스터(농어업)	산업단지(공단 등)
참여 주체	관련산업 주체	주로 국내 기업 (최근, 외국자본)
주체간 연관성	수직: 매우 높음 수평: 높음	대부분 수평조직 경쟁과 무관심
물리적 범위	개방	폐쇄
참여 동기	신사업 아이템 네트워크 연합경쟁 정보 공유	비용절감 - 저렴한 지가 - 산업 공용인프라
개설자 관심	네트워킹 지원 기업 지원 활성화 전략 마련	분양/임대 공용인프라 시설사용료 공용인프라 관리
조성 기간	장기	단기(조성과 분양)
목표 달성	장기	중단기
관련법	식품산업진흥법	자유무역지대 : 관련법 경제자유지대 : 관련법 등
사례	실리콘밸리 보성녹차클러스터 등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지대 농공단지 등

자료: 최성애 외(2008), p.9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목표는 동북아 수산식품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이다. 세부 목표는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늘려 관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클러스터에 유사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허브에 대해 식품산업진흥법 상의 클러스터를 도입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그림 2-1 | 클러스터, 단순산업단지, 허브의 관계

첫째, 소기의 목표 달성 장기화이다. 영세한 우리 수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물 교역을 둘러싼 세계, 동북아, 중국의 긍정적인 여건 변화를 기다려 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둘째, 식품산업진흥법 상의 지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원료 확보의 문제이다. 늘어날 만큼의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러한 물량을 확보하는 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한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산업공단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산업공단에서는 연관 산업 간(특히, 수평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상호 연관된 시너지 효과를 배제한 무관심한 경쟁은 자칫 경쟁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

둘째, 유치 관련 이외에 개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외 관련 기업 유치 시에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가 단순한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수산업과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지원과 일반 분야의 관련 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여기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북아(주로, 중국)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수산물 수출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기업의 영세성과 수출원료 확보, 클러스터의 장기화라는 단점과 산업공단의 개별기업 활성화 전략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내외 여건 변화

1) 대내여건의 변화

대외여건 변화에서는 동북아 수산물 생산 및 교역 동향과 전망, 동북아 수산물 시장의 변동을 통해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

분석을 위한 통계는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FAO의 통계를 이용한다. 이들 국가들은 FAO에 자국의 수산물 생산 통계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통계는 FAO 기준에 의해 별도로 가공된다. 따라서 FAO 통계와 국별 수산물 생산 통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동북아 수산물 생산 및 교역 동향과 전망

일반적으로 동북아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지칭한다. 이들 4개국은 경제 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단계도 상이하다. 또한 수산업에 있어서도 이들 4개국은 서로 다른 수준과 단계를 밟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이들 국가는 생산한 수산물을 서로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수산물 교역에서도 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 동북아 수산물 생산 동향과 전망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2011년 기준으로 1억 7,832만 톤으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2.7%씩 늘어났다.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량은 7,863만 톤으로 2012년에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44.1%를 차지했고, 동기간에 걸쳐서는 매년 3.3%씩 증가했다. 즉,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규모는 전세계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증가세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그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량 중에서 84.2%(2011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일본(6.0%), 러시아(5.6%), 한국(4.1%)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결국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 규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중국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동북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성장세 면에서는 중국의 4.1%에 이어 2.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수산물 생산량 역시 매년 1.6%씩 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유일하게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일본은 경우는 2011년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 수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2 | 동북아 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전세계	동북아					
		합계	대세계 비중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2001	136,279	56,829	41.7	2,677	44,273	3,729	6,150
2002	139,643	58,022	41.6	2,499	46,289	3,346	5,889
2003	139,836	60,260	43.1	2,502	48,263	3,400	6,096
2004	148,628	62,041	41.7	2,543	50,728	3,063	5,708
2005	151,524	64,182	42.4	2,719	52,466	3,323	5,673
2006	152,671	66,377	43.5	3,052	54,265	3,402	5,658
2007	156,790	68,705	43.8	3,287	56,161	3,590	5,667
2008	160,141	70,290	43.9	3,365	57,826	3,510	5,589
2009	164,220	73,066	44.5	3,201	60,475	3,949	5,440
2010	168,127	76,132	45.3	3,124	63,493	4,197	5,318
2011	178,323	78,628	44.1	3,261	66,219	4,391	4,756
연평균증감율	2.7	3.3	-	2.0	4.1	1.6	△2.5

주: FAO 수산물 생산에 해조류는 제외

자료: FAO, Fishstat j(ver. 2013년)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서 취급대상 품목의 원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산물 생산량 규모가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성장세는 있지만, 생산규모 면에서는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양식어업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감소 경향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 표 2-3 | 동북아 양식수산물 생산주어

단위: 천 톤, %

	전세계	동북아					
		합계	대세계 비중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2001	44,329	31,940	72.1	668	29,869	90	1,312
2002	47,384	34,143	72.1	794	31,862	101	1,385
2003	50,319	35,914	71.4	840	33,664	109	1,302
2004	54,588	38,265	70.1	953	35,942	110	1,261
2005	57,835	40,042	69.2	1,058	37,615	115	1,254
2006	61,402	41,969	68.4	1,279	39,359	106	1,224
2007	64,956	43,962	67.7	1,399	41,173	106	1,284
2008	68,852	45,366	65.9	1,395	42,669	116	1,187
2009	73,093	47,972	65.6	1,332	45,279	117	1,243
2010	78,092	50,479	64.6	1,377	47,830	121	1,151
2011	83,729	52,709	63.0	1,499	50,173	130	907
연평균증감률	6.6	5.1		8.4	5.3	3.7	△3.6

주: FAO 수산물 생산에 해조류는 제외

자료: FAO, Fishstat j(ver. 2013년)

그러나 양식수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한국은 동북아 4개국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며, 그 성장세가 4개국 중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수산물류식품 허브 조성에 있어서 원료 공급 안정성을 일정 수준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OECD와 FAO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²¹⁾ 2011년(2009년~2011년 평균)에서 2021년에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 4,923만 톤에서 1억 7,151만 톤으로 2,222만 톤(14.9% 증가)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량은 동기간에 걸쳐 6,281만 톤에서 7,416만 톤으로 매년 1.7%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세계의 연평균 증가율인 1.4%보다 0.3%로서 향후에도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의 수산물 생산량보다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21)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

| 표 2-4 | 세계 및 동북아 수산물 생산 전망 추이

단위: 천 톤, %

		2011년	2021년	2021년-2011년	연평균 증감률
세계		149,287	171,511	22,224	1.4
동북아	합계	62,810	74,161	11,351	1.7
	대세계 대비	(42.1)	(43.2)	(51.1)	
	한국	2,266	2,232	△34	△0.2
	중국	51,717	62,899	11,182	2.0
	러시아	4,116	4,451	335	0.8
	일본	4,711	4,579	△132	△0.3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

동북아의 개별 국가별로 보면, 동 기간에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로 특히 중국의 매년 2.0%씩 늘어나 세계 및 동북아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0.8%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매년 0.2%씩 줄고, 일본은 0.3%씩 감소하여 2021년에는 각각 223만 톤과 458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과거 동안의 생산기반에 의한 과거 생산실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국가의 생산 전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ECD-FAO의 전망치가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보다 2,222만 톤의 공급 증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산물 생산은 곧 소비라는 관점에서 현재보다 2,222만 톤 정도의 초과수요를 공급 측면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산물 생산 감소 전망에 따라서 정부는 아마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어획어업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자원이 자연적으로 급속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위적인 자원관리의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목표로 설정한 수산물 수출 100억 불 달성이다. 환율이나 국제 수산물 가격이 무한정 뛰어올라 현재의 수산물 수출량만으로 1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7억 불에서 무려 4배 정도 그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 환율에 반영되기 전에 수출은 수입으로 전환될 것이며, 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에 그 전에 수요 감소에 의한 가격 하락이 유발될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줄어드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전망,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식량안보)을 고려할 때에 수출원료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수출(재수출)의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나. 동북아 수산물 교역 동향과 전망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량은 2009년 기준으로 1,400만 톤으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인 6,623만 톤의 약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서 보면, 수출은 16.8%이며 수입은 25.3%이다.

즉, 동북아 전체로 볼 때 물량 기준으로 순수입지역이 된다.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량은 1999년~2009년 동안 매년 4.5%씩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의 그것(3.2%)보다 1.3%p 높다.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서 보면, 특히 수출이 3.4%p 높으며 수입은 0.1%p 정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량 추세가 더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동북아의 수출량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 표 2-5 | 동북아 수산물 교역량 추이

단위: 천 톤, %

		1999	2003	2007	2009	연평균성장률	
세계		수출	24,145	28,073	31,664	32,540	3.0
		수입	24,218	28,574	34,101	33,686	3.4
		교역	48,363	56,647	65,765	66,226	3.2
동북아	합계	수출	2,954	4,102	5,542	5,477	6.4
		수입	6,047	7,619	8,933	8,526	3.5
		교역	9,001	11,721	14,475	14,003	4.5
	한국	수출	474	423	533	619	2.7
		수입	755	1,252	1,429	1,179	4.6
		교역	1,229	1,675	1,962	1,798	3.9
	중국	수출	1,331	2,082	3,036	2,936	8.2
		수입	1,305	2,324	3,453	3,727	11.1
		교역	2,636	4,407	6,489	6,663	9.7
	러시아	수출	945	1,232	1,363	1,426	4.2
		수입	576	832	1,167	1,030	6.0
		교역	1,520	2,064	2,530	2,456	4.9
	일본	수출	204	365	611	497	9.3
		수입	3,412	3,210	2,883	2,590	△2.7
		교역	3,616	3,575	3,495	3,086	△1.6

자료: FAO, fishstatJ j(ver. 2013년)

동북아 내에서 국가별로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교역량은 중국이 666톤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일본(22.0%), 러시아(17.5%), 한국(12.8%)이 차지하고 있다. 단, 동북아 국가별로는 중량기준으로 수산물 교역구조는 순수출국인 러시아, 순수입국인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분된다. 특히, 일본은 수산물 교역량에서 수출 비중이 83.9%로 거의 수입에 의존한 형태인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수출비중은 각각 34.4%와 44.1%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유일한 수산물 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출 비중은 58.1%여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다.

OECD-FAO 전망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교역량은 2011년에서 2021년까지 7,039만 톤에서 8,937만 톤으로 1,897만 톤(26.9%)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903만 톤(25.3%)과 994만 톤(28.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량은 동기간에 2,091만 톤에서 2,644만 톤으로 553만 톤(26.4%)이 늘어날 전망으로 이는 늘어나는 세계 수산물 교역량(1,897만 톤)의 29.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동북아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395만 톤(36.2%)과 158만 톤(15.8%)이 늘어, 수입보다는 수출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국가별로 보면, 교역량 감소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교역량이 각각 38.4%, 34.9%, 34.9% 등 30% 이상씩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은 5.7% 줄어든다고 전망되었다. 또한 동북아 3개국은 모두 수출량과 수입량이 늘면서 활발한 교역 전망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은 수출이 22만 톤(25.9%) 줄고, 수입이 8만 톤(5.3%) 늘어나 수산물 수급에서 수입수산물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일본의 경우는 수출량이 71%, 수입량이 0.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이 수출의 8배 정도이어서 수산물 순수입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서는 수산물 교역적자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수산정책은 공급 안정화이었기 때문에 순수입국이라는 것이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수산물 교역 전망은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 일본은 현재의 수산물 수출입 기반에 의해 글로벌 수산물 교역 호황이라는 전망으로부터 국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수산정책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이 기존의 수산물 수출 기반에 근거한 과거 실적의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적인 수산물 교역 호황의 기회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내여건의 국내 수산물 수출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표 2-6 | 동북아 수산물 교역량 전망 추이

단위: 천 톤, %

지역		항목	2011	2021	2011년-2021년	연평균증감률
세계		수출	35,652	44,683	9,032	2.3
		수입	34,742	44,683	9,941	2.5
		교역	70,394	89,367	18,973	2.4
동북아	합계	수출	10,897	14,842	3,945	3.1
		수입	10,013	11,597	1,583	1.5
		교역	20,910	26,439	5,529	2.4
	비중	수출	30.6	33.2	3	0.8
		수입	28.8	26.0	- 3	-1.0
		교역	29.7	29.6	- 0	0.0
	한국	수출	829	614	-215	-3.0
		수입	1,529	1,611	81	0.5
		교역	2,358	2,224	-134	-0.6
	중국	수출	8,038	11,317	3,278	3.5
		수입	3,070	4,060	990	2.8
		교역	11,109	15,377	4,268	3.3
	러시아	수출	1,459	1,937	478	2.9
		수입	1,291	1,773	483	3.2
		교역	2,750	3,710	960	3.0
	일본	수출	570	975	405	5.5
		수입	4,123	4,153	30	0.1
		교역	2,750	3,710	96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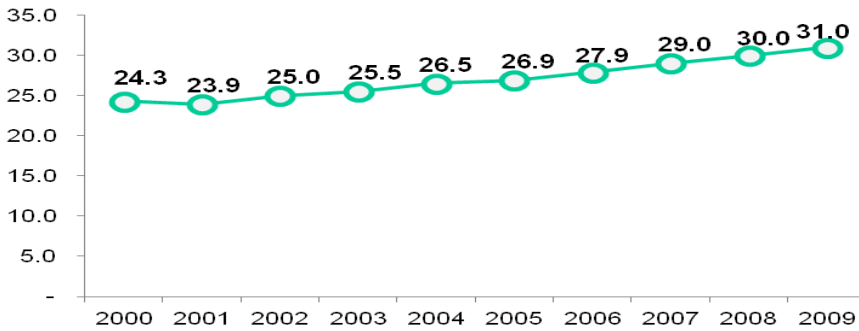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

세계적인 수산물 생산 증가와 교역 증가라는 전망은 결국, 향후 약 10년 동안은 늘어나는 수산물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양과 비중으로 교역 상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산물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동북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산물 교역 전망치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기존의 생산 및 수출 기반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국익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나머지 3국은 그러한 이익에 동참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 수산물 생산 및 교역 전망치만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기반을 수출 증대를 위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수산물 소비 시장의 성장과 중국의 대두

앞에서도 보았듯이 중국의 수산물 생산과 교역은 동북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새로운 수산물 소비시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경제규모가 최근 G2가 된 중국의 경제 성장세의 둔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한동안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 성장 속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이 내수경제를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중국의 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내수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2배 이상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0년대 연평균 16.0%로 이 상태가 정책적으로라도 지속될 경우에는 2020년에는 일본 소비자를 제치고 세계 2위로 등극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은 수산물 소비의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던 2000년에서 2009년 동안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24.3kg에서 31.0kg으로 6.7kg(27.5%)이 늘었다. 중국 인구가 약 14억 명이므로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은 수산물 소비를 938만 톤을 늘여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3배에 해당한다. OECD-FAO의 수산물 소비 전망에서는 이후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32.0kg에서 37.1kg으로 5.1kg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683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앞에서 동기간에 걸쳐 늘어날 수산물 생산량 2,222만 톤의 30.7%에 달한다.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 그림 2-2 | 중국의 수산물 소비 추이(kg/인/년)

이러한 수산물 소비 증가는 동북아 국가 중에서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매년 0.5%씩 감소하여 55.9kg에서 53.2kg으로 2.7kg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 러시아는 매년 수산물 소비량이 각각 0.9%와 1.1%씩 늘어 2021년에는 61.3kg과 27.9kg이 될 전망이다. 동북아 전체적으로는 동기간에 걸쳐 매년 0.6%씩 늘어 2021년에는 44.9kg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같은 해 세계 수산물 평균 소비량인 19.6kg에 2.3배에 달한다.

따라서 동북아의 수산물 소비시장은 2021년에 약 6,330만 톤으로 이는 2011년에 비해 726만 톤(11.4%)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66만 톤으로 동북아 수산물 소비시장의 78.5%,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높은 수산물 소비량과 인구로 인해 676만 톤으로 10.7%, 러시아는 391만 톤으로 6.2%, 한국은 297만 톤으로 4.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표 2-7 | 동북아 수산물 소비 전망

단위: kg/인/연, %

		2011년	2021년	2021년-2011년	연평균증감률
세계		18.5	19.6	1.1	0.6
동북아	단순평균 (세계 대비)	42.2 (228.1)	44.9 (229.1)	2.7	0.6
	한국	55.9	61.3	5.4	0.9
	중국	32.0	37.1	5.1	1.5
	러시아	24.9	27.9	3.0	1.1
	일본	55.9	53.2	-2.7	△0.5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

| 표 2-8 | 동북아 수산물 소비 시장 규모 추정

	인구 (2010년, 명)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전망 (2021년, kg/연/인)		2021년 수산물 시장 규모 (톤)	
		소비량	증가량	총소비량	증가분 (11년 대비)
동북아	1,654,241,866	44.9	6.4	63,303,878	7,245,945
한국	48,508,972	61.3	5.4	2,973,600	261,948
중국	1,338,612,968	37.1	5.1	49,662,541	6,826,926
러시아	140,041,247	27.9	3.0	3,907,151	420,124
일본	127,078,679	53.2	-2.1	6,760,586	-263,053

주: 2021년 인구는 2010년 기준임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 ; UN National Statistics Division 홈페이지 (unstats.un.org)

결국, 향후 동북아의 수산물 소비시장은 양적인 규모로 볼 때에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전망과 추정에 일본의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고려할 때는 일본의 수산물 생산, 교역, 소비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라 점이다. 또한 일본은 자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감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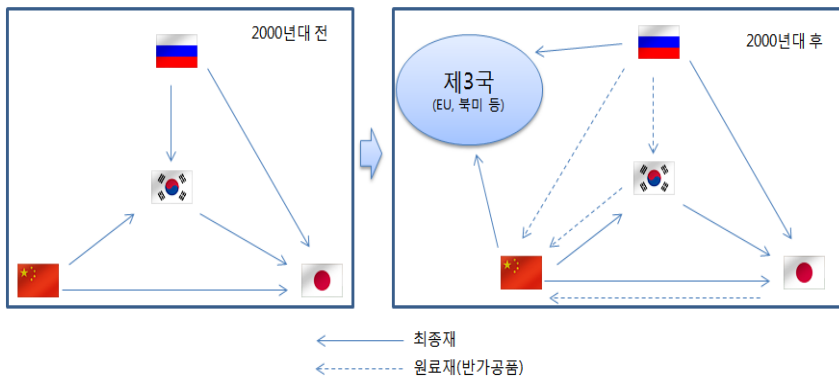
오히려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수산물 소비가 2011년에 비해 2021년에는 다소 줄어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규모 있는 국가 중에서는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최상위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의 경향을 OECD-FAO 전망 수준에서 이어준다면, 일본의 자국 수산물을 대체하여 수입이 크게 늘고, 일본산 수산물을 대체하는 수출국이 필요하게 된다. 동북아에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수산업 성장 수준이 성숙기에 이른 한국을 고를 수 있다.

(3) 동북아 수산업 분업화

동북아의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은 북서태평양 어장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자급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화의 가속화,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 러시아의 경제성장 등에 의해서 상호 수산물 수출입 증대와 더불어 분업화 과정이 진척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수산물 소비 성향에 따라서 내수 중심의 수산물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징어, 다랑어와 같은 수산물 품목은 한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 상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높은 수산물 소비 성향에 의해 내수 중심의 수산물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량은 미약하나 고급 수산물(다랑어, 돔 등)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교역 금액에서는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지만, 교역량에서는 수입이 오히려 수출을 역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수산물 구조가 중계가 공무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원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풍부한 베링 해의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최종소비재(명태, 계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가공원

료(명태)를 수출하는 반면에 자국 내 수산물 소비는 크지 않다. 이러한 동북아 주요 4국의 수산물 수급 구조는 과거의 내수 중심형이 한국과 일본에 의존한 단순 수입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분업화 구조 속으로 이전되었다.



| 그림 2-3 | 동북아의 수산업 분업화에 따른 교역도

따라서 동북아 4국은 수산물 교역에서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수산물 최종소비재의 수입국가, 중국은 가공원료의 수입과 가공을 통한 최종재 수출, 러시아는 동북아에 주로 가공원료를 수출하고 있다. 단, 이러한 분업화 특징 중의 하나는 한국의 교역은 지리학적 특징에 의해 분업화 교역물류의 중심지로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부산 감천항에 원양단지를 형성하고, 냉동냉장창고 설립에 대한 저리용자 정책을 투입하면서 대단위의 냉동냉장물류단지를 형성했고,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동북아의 수산업 분업화 과정에서 물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더불어 새로운 수산물류의 그림이 동북아에서 연출되고 있다.



자료: 장흥석 외,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냉동냉장업의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 12.

| 그림 2-4 | 동북아의 수산물 교역물류의 변화

과거에 일본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중·러의 수산물은 일본 내 높은 물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부산 감천항 원양단지에 집적되어 보관되다가 일본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부산 감천의 냉동냉장창고들에게 보세장치장 지정 정책을 투입하여 이러한 물량 확보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0년대 말로 가면서 중국은 한국의 부산 감천항 원양단지를 모델로 하는 국제수산물류 인프라 단지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북 3성의 다롄(大連) 대요만의 보세구이다. 이 보세구 외에 중국의 연해부를 따라서 다수의 보세구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세구에 냉동냉장물류단지가 계획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 영향으로 동북아의 수산물류에서 코어(core)를 형성하던 부산 감천항의 원양단지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2) 대내여건 변화

한국은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관·학·연이 뜻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수출 목표 100억 달러 달성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여기서는 이러한 수산물 수출 목표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성장을 위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추려 보았다. 이러한 대내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동 연구가 제안하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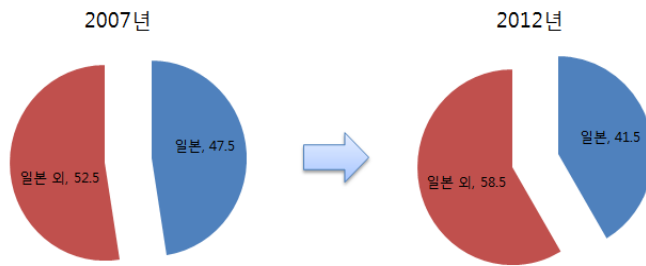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구조

가. 높은 대일 수출 의존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의존도는 47.5%였고,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41.5%로 약 6.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수출의존도는 40% 이상이다. 게다가 대일 수산물 수출량 비중은 동 기간에 19.1%에서 20.5%로 1.4%p 늘어나 수출액의 증가율에 비해 수출량의 증가량은 약 4배 정도 낮다. 동 기간에 있어서 대일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엔화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정책 하에 수산물 관세를 2%대로 낮추고, 수입에 의존한 수급 체계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도모했다. 이러한 정책 노선 전까지 일본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한국과 중국이었으나, 이후 일본의 수산물 시장은 전 세계 수산물의 각축장이 되었다. 굳건하던 일본의 다량어 횡감용 시장은 노르웨이나 칠레의 연어에 그 시장을 내주고 있는 것

과 같이 전 세계의 수산물들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나마 인접국인 한국으로부터 활넙치, 김, 다랑어(횡감용), 활굴, 활전복 등이 일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성장세가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이르는 불투명하다.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통계연감. 각 연도

| 그림 2-5 |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의존도

일본의 수산물 시장의 성장세가 우리의 수출 목표인 100억 달러를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정도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일본 수산물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본의 1인당 수산물 공급량은 2009년에 54.3kg으로 2005년의 61.5kg에 비해 7.2kg(11.7%) 줄었다. 1인당 어패류의 가계 소비 역시 금액이나 수량 각각 22.5%와 26.7%씩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수산물 순소비량도 -28.5%로 줄어들고 있다.

즉, 일본의 수산물 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위기감에 따라서 이미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식육(食育)’ 정책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입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시장 공급의 약 40%~50%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일부 자국 수산물(연어, 임연수어 등)의 공급 잉여 현상에 따라서 수산물 수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 표 2-9 | 일본의 수산물 수급 관련 현황

연도 기준		2005년	2009년	증감률(%)
1인당 수산물 공급량(kg/인)		67.2	54.3	-19.2
연도 기준		2007년	2012년	증감률(%)
1인당 어패류 가계 소비	금액(엔)	32,646	25,315	-22.5
	수량(g)	13,758	10,085	-26.7
연도 기준		2006년	2011년	증감률(%)
1인당 수산물 순소비량(kg/인)		32.8	28.6	-28.6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백서』, 2012.

나. 전형적인 간접수출 구조-수출 주체 역량의 부족

원양어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간접 수출 구조이다. 수출은 생산자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생산자가 직접 해외로 나가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하는 ‘직접수출’과 해외의 바이어나 국내 수집상이 생산자의 상품을 모아서 수출하는 ‘간접수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자들은 어로어업이든 양식어업이든 대부분이 영세한 생산자들이다. 따라서 이들 생산자들이 수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일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바이어들이 직접 우리 생산자들과 접촉하여 구매 후 일본으로 가져가거나 이들을 대신한 국내 대행업자가 일본으로 가져가는 형태다.

정리하자면, 해외의 수출 시장에 나가서 마케팅, 판매촉진 등을 수행하기에는 우리 생산자의 역량이 영세하며,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는 우리 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중에는 자신의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주체 역량의 한계는 결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구조로 이어지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 혹은 수산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파동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 원료 중심형 수출의 한계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이 크게 신장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산물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중국의 수산가공품이 전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의 수산물 생산 및 교역의 분업화로 인해 중국은 중계가공무역국가로 성장했고, 세계의 각지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식품을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수산가공식품을 위한 수산가공 원료를 해외 각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가공품인 흰살 생선 필렛류는 명태를 주요 원료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명태 수입이 늘고 있다. 다랑어와 오징어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다랑어와 오징어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명태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2010년까지 한국이었지만, 2011년에는 중국이 한국이 앞지르면서 러시아 명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명태 수요가 많아 원어를 최종재 상태로 주로 수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명태 원료가 필요했지만, 한국의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0년대에 있어서는 한국이 명태를 수입하고 그 일부를 중국이 재수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의 수산가공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거래 과정인 한국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러시아로부터 명태를 가공원료로서 직수입하면서 러시아 명태 수입국의 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다.

| 표 2-10 | 러시아의 국가별 냉동명태 수출량 추이

단위 : 톤, %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중	연평균 증감률
중국	168,984	159,701	193,348	289,953	293,602	41.4	11.7
한국	311,738	313,776	267,202	326,427	280,418	39.6	-2.1
일본	24,053	42,612	21,610	64,828	49,291	7.0	15.4
파나마	13,571	13,095	21,769	4,049	27,727	3.9	15.4
기타	49,841	57,839	80,634	100,412	57,533	8.1	2.9
합계	568,187	587,023	584,563	785,669	708,571	100.0	4.5

주: 러시아의 냉동명태 수출 항목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 중앙통계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나타나는 특이한 사항은 러시아의 명태를 수입하는 양대국인 한국과 중국은 한국이 최종재로서 명태를 수입하고, 중국이 중간재로서 명태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으로의 러시아 수출가격이 더 높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흰살 필렛을 위한 가공원료인 명태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명태의 대한국 수출보다는 대중국 수출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 표 2-11 | 러시아 명태의 국가별 수출가격

단위 : 달러/kg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A)	0.79	0.87	0.93	0.98	0.94
중국(B)	1.08	1.11	1.18	1.11	1.09
가격 차(B-A)	0.28	0.23	0.26	0.13	0.15

주: 러시아의 냉동명태 수출 항목

자료: 러시아연방통계청, 중앙통계 데이터베이스

한편, 2009년~2012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품목별 평균 수출액 상위 10위를 보면, 오징어, 어란, 명태, 대구, 삼치, 넙치, 김, 다랑어류, 기타어류, 기타연체동물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품목(김 제외)이 중국에서는 가공원료로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원료로

사용되는 어란, 명태, 대구, 넙치, 다랑어류 등은 수출량 및 수출액에서 동기간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2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수산물 현황

어종	용도	대중 수산물 수출 (평균, 2009~2012)		증감율(%)	
		중량(톤)	금액(천 달러)	중량	금액
합계	-	119,987	303,503	8.3	26.4
오징어	원료	29,590	56,562	-16.0	-3.9
어란	원료	2,148	24,016	193.6	353.5
명태	원료	20,171	23,927	37.7	35.4
대구	원료	7,732	23,893	85.7	91.2
삼치	원료	6,499	20,792	-1.1	12.2
넙치	원료	3,541	17,197	67.3	86.7
김	최종	882	17,071	37.7	42.0
참치	원료	3,846	15,401	21.6	29.0
기타어류	-	7,117	13,195	-14.9	-13.9
기타연체동물	-	821	6,198	-18.6	-12.0
기타 수산물	-	37,640	85,249	13.3	31.2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세계적인 수산물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은 앞으로 중계가공무역을 위한 원료시장보다는 소득 상승에 의한 최종소비재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수산기업들이 중국의 소비시장 진출에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산물 수출은 여전히 원료 수출 중심이며, 이들 대부분이 어선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수산물이라는 점, 다랑어류는 국제적인 자원관리로 인해 생산 증대가 어렵다는 점, 오징어는 국내 TAC 대상어종임과 동시에 남미 오징어 어장에서 우리 원양어업의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대중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원료 중심 수출은 수출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공급량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3) 국내 수산물 수출정책

수산물 수출 목표 100억 불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연별 수산물 수출 목표를 정해 한걸음씩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육성 정책²²⁾’이다. 여기서는 이 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에서 설명한 글로벌 수산시장 확대의 기회가 시기·시간적으로 부합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가.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육성 정책

동 정책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품목별 산·학·연 클러스터가 연계한 정책사업으로 글로벌 수산물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이라는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양식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3년 사업에서는 초기단계로서 10대 전략품목에 대한 종자개발, 양식기술 개발, 대량생산 기반 구축 및 수출지원 관련사업에 166억 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참다랑어 치어의 월동 및 분양(400미), 민물장어 종묘 생산 기간의 단축(46일), 해조류 신품종 출원(2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즉, 동 사업은 현재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품목을 선택하여 R&D 분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관련성도가 두드러진 품목은 참다랑어, 민물장어, 해조류(2건)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목표와 동 정책이 연관해서 나타나는 문제(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타깃 시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참

22) 10대 수출전략품목: 넙치, 전복, 김, 해삼, 민물장어, 참다랑어, 갯벌참굴, 관상어, 새우, 능성어

다랑어 양식은 횡감용 시장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다랑어 횡감용 시장구조는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일본의 다랑어 횡감용 시장에서는 연어시장과 다랑어 시장의 경쟁 가속화, 완전양식 다랑어의 비경제성, 다랑어 양식 중 완전 양식보다 축양 양식의 비중 증대 등의 현상에 의해 여전히 양식 다랑어는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민물장어의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일본이며, 그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의 민물장어는 일본인들의 소비성향에 맞도록 개복(開腹)·조미(調味)되어 일본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R&D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다랑어류 양식과 민물장어 양식의 성과가 수출시장 타깃과의 괴리를 보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체역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10대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R&D 정책 사업에서 유수의 우리 국내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이를 수출하기 위한 주체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동 정책 사업이 국가 클러스터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수출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정책은 주체역량 강화와 Spill-over 효과를 기대성으로 보는 사업으로 매우 장기에 걸친 정책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여력과 시간 내에서 현재의 글로벌 시장 확대의 과실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마케팅의 부재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R&D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결과물로서 참다랑어와 민물장어의 양식, 해조류(2건)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후, 이러한 10대 수산물 수출 품목을 수출목표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마케팅이 절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계획이 나와 있지 못하다. 선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주체 역량이 영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수출 마케팅이 충분히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넷째, 글로벌 시장의 성장과 10대 수출전략 품목의 시간적 갭이다. 10대 품목이 수출로 이어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 수출 정책은 2021년 FAO의 수산물 공급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데,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한 R&D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하고, 수출업자 혹은 생산자의 주체역량을 확립하고, 글로벌 수출 마케팅을 추진하기에는 FAO가 전망한 시점 말기에서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글로벌 수산물 시장 확대를 국익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동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중단기적인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의 한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글로벌 수산시장 확대의 관점에서 그 한계점을 다루고자 한다.

식품클러스터 정책의 도입은 본래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FAO의 전망 전에 우리 농수산업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여 농수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다. 이후, FAO의 글로벌 수산시장 성장 전망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응한 정책의 일환에 포함된 것이 식품클러스터 정책이다.

현재 수산업에서 클러스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서 활발한 분야는 제주 넙치 클러스터(제주 광어 주식회사)이다. 2012년에는 우수 클러스터로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 동 클러스터가 우수 클러스터 선발된 이유는 마케팅, 신제품 개발 R&D, 사업단 운영, 투자유치(출자 실적) 및 수출액,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관리, 사업추진 과정, 우수 사례 추진 실적, 수출 등에 대한 현장 평가가 높았기 때문이다.

동 클러스터는 2009년 8개 업체가 참여한 광역형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11년까지 총 63억 원을 투자하여 특허기술 3건, 대형유통업체와의 공동판매 추진, 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신규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2년 현재 3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동 클러스터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활넙치 수출액은 2010년의 5,9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4,500만 달러로 감소했고, 수출량은 동 기간에 4,267톤에서 3,253톤으로 줄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일본으로 거의 전량 수출되고 있다.

즉, 동 클러스터 정책이 생산자들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별도의 정책적 판단을 내린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출 증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활넙치의 수출은 여전히 일본에 거의 전량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출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3 | 활넙치의 수출 주이

	활넙치 수출		대일 수출활넙치 수출		대일의존도	
	백만 달러	톤	백만 달러	톤	%	%
2007	43	3,116	43	3,116	100	100
2008	42	3,906	42	3,906	100	100
2009	49	4,622	49	4,622	100	100
2010	59	4,267	59	4,267	100	100
2011	45	3,349	45	3,349	100	100
2012	45	3,253	45	3,253	100	100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수산분야의 클러스터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 넙치 클러스터 역시 클러스터 설립 이후 3년이 넘는 시점에서 수출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클러스터 정책은 주체 역량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으로서 이러한 주체 역량의 결과가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3) 한국의 동북아 수산물류허브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부산 감천항은 원양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1990년대 원양기지화를 이루었고, 이에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원양단지 내에 냉동냉장창고를 입지시키기 위해 정부는 냉동냉장창고 설립 저리 용자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서 감천항 주변에는 원료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용 냉동냉장창고들이 각각 1만 톤 이상의 규모로 입지했다. 그 결과, 부산은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중에서 냉동냉장창고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되었다.

우리나라 총 냉동냉장창고 수는 냉동냉장수협이 통계(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냉동냉장 수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총 863개로 이 중 136개(15.87%)가 부산에 입지하고 있다. 냉장능력은 우리나라 전체가 약 351만 톤으로 이 중 47.3%에 해당하는 166만 톤이 부산에 입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감천항에 입지한 냉동냉장창고의 능력은 개략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0년대에는 원양어획물을 주로 보관하면서 냉장능력을 확대시켜왔다. 이후, 확대된 냉장능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일 수출 물량이 일본의 높은 보관물류비용을 회피하여 감천항에 보관되면서 동북아 수산물 환적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 표 2-14 | 우리나라 냉동냉장창고 현황(2010년말 현재)

	냉동냉장창고수 (개)	냉장능력 (MT)	평균냉장능력 (MT/개)	냉장능력비중 (%)
합계	863	3,511,258	4,069	100.0
서울	7	63,100	9,014	1.8
부산	136	1,659,241	12,200	47.3
대구	15	23,887	1,592	0.7
인천	30	142,843	4,761	4.1
광주	-	-	-	-
대전	5	14,200	2,84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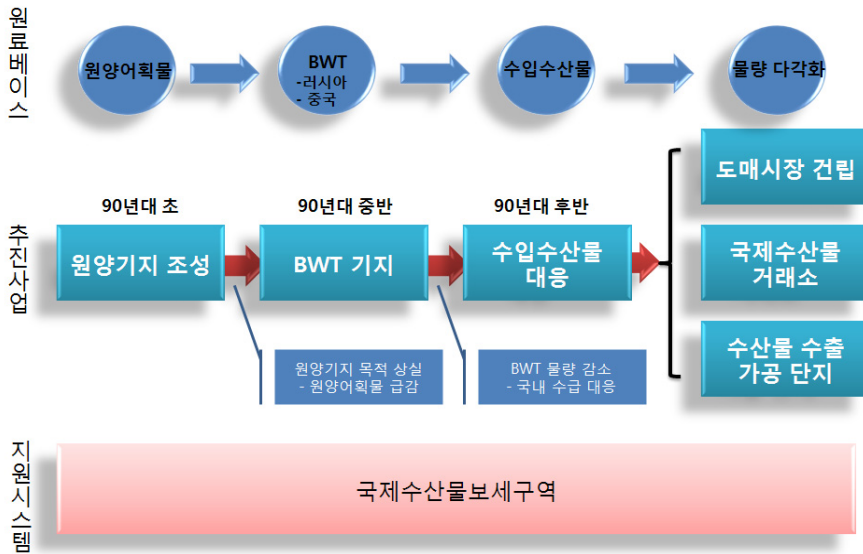
| 표 2-14 | 우리나라 냉동냉장창고 현황(2010년말 현재)(계속)

	냉동냉장창고수 (개)	냉장능력 (MT)	평균냉장능력 (MT/개)	냉장능력비중 (%)
울산	3	6,820	2,273	0.2
경기	97	962,052	9,918	27.4
강원	78	122,707	1,573	3.5
충북	7	52,031	7,433	1.5
충남	43	71,673	1,667	2.0
전북	35	33,308	952	0.9
전남	92	96,555	1,050	2.7
경북	69	76,886	1,114	2.2
경남	175	159,780	913	4.6
제주	71	26,175	369	0.7

자료: 냉동냉장수협(<http://www.n-suhyup.co.k>)

이러한 감천항의 냉동냉장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는 당초의 원양기지의 역할 이외에 동북아의 수산물류허브 육성에 부합토록 국제수산물 보세구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감천항의 냉동냉장창고에게 보세장치장의 기능을 부여하여 이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 보세구의 등장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의 냉동냉장창고들이 설립되면서 감천항 냉동냉장창고들의 보관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는 감천항에 도매시장, 국제 수산물 거래소,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등과 관련한 일련의 물량 확보 및 수출 증가를 위한 인프라 정책을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는 감천항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물량을 창출하는 기능보다는 기존의 러시아산 명태와 원양어획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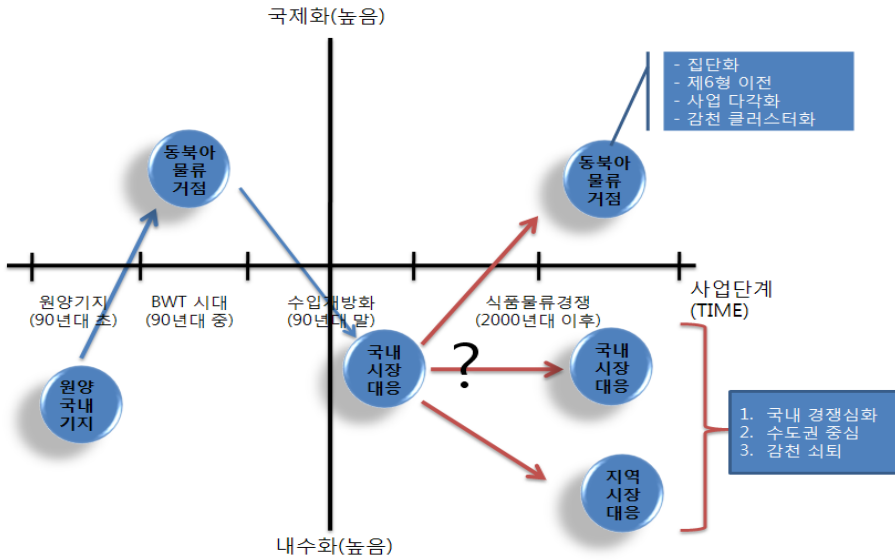


자료: 장홍석 외(2008)

| 그림 2-6 | 감천항 원양단지 내 냉동냉장창고단지의 역사적 사업 추진 과정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서 감천항은 과거의 동북아 수산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로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수도권의 거대 냉동냉장창고(물류센터)에 대해 감천항의 냉동냉장창고 업자들은 보관물량 경쟁 상대로서 의식하고 있다. 즉, 감천항의 냉동냉장창고들은 내수 보관물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지리적인 입지 조건과 냉동냉장능력의 증대에 따라서 구축된 우리나라의 동북아 수산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는 향후 중국의 보세구의 냉동냉장능력 확충에 따라서 보다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장홍석 외(2008)

| 그림 2-7 | 감천항 냉동냉장단지의 포지셔닝 변화

3. 필요성

1) SWOT 분석

이상과 같은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분석을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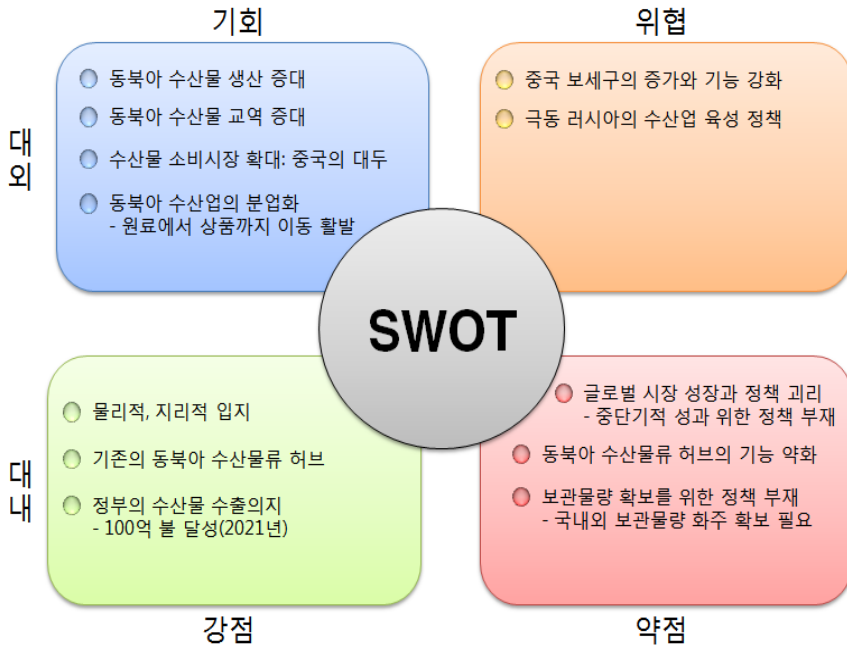
대외적으로 글로벌 수산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FAO의 전망에 의하면 2021년까지 2,300만 톤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 30% 이상의 추가 공급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분야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오히려 수산물 생산량은 물론 수출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FAO가 보는 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물류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부산 감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수산물 허브를 육성하여 수산분야의 동북아 물류를 선도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21년까지 수산물 100억 불 수출 목표 달성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의 확대가 중국의 보세구의 등장으로 중국 자체의 국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의 극동 수산업 육성 정책이 가미될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이 물리적·지리적으로 누려온 동북아 수산물 허브의 입지는 향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출 육성 정책은 10대 수출 전략 품목 육성과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 연계된 장기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2021년까지의 글로벌 수산시장 확대 속에서 중단기적인 이익을 국익으로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존의 동북아 수산물 허브를 발판으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산식품 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화주(업계 등)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주체 역량은 동북아의 수산물 시장이 확대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상태이어서 글로벌 수산시장 확대의 주체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그림 2-8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한 SWOT 분석

2) 기대 효과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설립과 관련한 기대효과는 FAO의 전망에서 중국 시장의 수산물 수입량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취급량을 시나리오별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개선효과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수산물 교역량은 2011년 1,111만 톤으로 2017년에는 1,350만 톤에서 2021년에는 1,537만 톤으로 27.7%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교역금액으로 환산하면, 534억 달러가 된다.

| 표 2-15 | 중국의 수산물 교역 전망(FAO)

		2011년	2017년	2021년
수량 (만 톤)	교역량	1,111	1,350	1,537
	수출량	804	987	1,131
	수입량	307	363	406
금액 (억 달러)	교역액	278	411	535
	수출액	201	301	393
	수입액	77	111	142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

여기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량 증가에 대해 10%, 20%, 30%가 우리의 동북아 수산물류허브를 경유하여 중국에 수입되는 것을 수입량과 수입액으로 2017년에 얻을 수치로 환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2-16 | 시나리오별 대중 수출 실적 전망

시나리오		2017	2021
중국의 수입량 (만 톤)	10%	36.3	40.6
	20%	72.6	81.2
	30%	108.9	135.3
중국의 수입액 (억 달러)	10%	7.7	14.2
	20%	15.4	28.4
	30%	23.1	42.3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

따라서 FAO의 2017년 수산물 교역전망을 기준으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육성에 따른 대중국 수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중국의 늘어날 수산물 수입액 중 10%를 점유할 때, 우리의 전세계 수산물 수출액 비중은 27.7억 달러 증가로 1.0%p 개선된다. 20% 점유 시에는 35.4억 달러 증가로 1.8%p 개선되며, 30% 점유 시에는 43.1억 달러 증가로 2.5%p 개선된다.

| 표 2-17 | 시나리오별 대중 수출 실적에 따른 한국의 수산물 수출 개선(2017년 기준)

중국 수입규모 시나리오		기존 (FAO 전망) (2017년)	중국의 수입액 증가 시나리오별 점유 (2017년)	개선효과
수출액 (억 달러)	10%	20.0 (1.6%)	27.7 (2.6%)	7.7 (1.0%p)
	20%		35.4 (3.4%)	15.4 (1.8%p)
	30%		43.1 (4.1)	23.1 (2.5%p)

주: ()는 전세계 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수출액 비중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

또한 이를 통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와 간접일자리 창출로 구분된다. 우선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 점유율 10%, 20%, 30%일 때, 각각 8,778명, 17,556명, 26,334명이 늘어난다. 이를 기존의 우리 수산가공업(2011년)과 비교하면, 10%, 20%, 30%일 때 각각 28.4%, 56.8%, 85.2%씩 늘어나게 된다.

| 표 2-18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에 따른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2017년 기준)

중국 수입 증가율 (수입액 기준)	수출증가분		고용유발계수	일자리 창출 (명)
	(억 달러)	(십억 원)		
10%	7.7	924	9.5	8,778
20%	15.4	1,848	9.5	17,556
30%	23.1	2,772	9.5	26,334

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 2012에 근거한 시나리오 분석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표 2-19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에 따른 수산가공업의 일자리 창출 개선(2017년 기준)

동북아 수산물류 일자리 창출(명)	우리 수산가공업 피용자수(2011년)	수산가공업에서의 고용 효과(2017년)	
		증가인원(명)	증가비율(%)
8,778	30,923	39,701	28.4
17,556		48,488	56.8
26,334		57,257	85.2

제3장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분석

1) 현행법 분석

(1)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의 목적 및 제도적 취지

자유무역지역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²³⁾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국제무역과 외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외국화물에 대하여 개방을 한 지역으로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고 철도, 도로, 해운과의 연계 운송망이 발달된 곳에 설치되어 국제물류 유통 및 수출입 화물을 유치, 촉진하는데 유리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국가의 관세행정과 통제로부터 제외된 특별지역으로서 관세와 제세공과금이 감·면제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며, 통관절차, 관세징수에 관한 적용이 배제되며, 외국산화물이 반입되어 청소, 개장, 상표부탁, 혼합, 가공, 조립, 제조, 재포장되는 작업이 가능하고 상품전시 및 재수출도 가능하다.

(2) 자유무역지역의 법률상 개념(동법 제2조)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제1조(목적)

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동법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²⁴⁾

(3) 유사제도간 비교분석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 주요 특구제도로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외자유치 및 투자촉진에 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므로 입주자격, 지원산업의 대상, 지원체계가 상이한 실정이다.

가.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 내에 지정하여 제조업체 중심이며,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지정의 목적은 고도기술산업 육성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 내에 지정하며 외국인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 1천명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 5000만 달러이상이면서 신규 상시고용규모 5백 명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1가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주종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²⁵⁾

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전략고도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²⁶⁾

24)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2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장 외국인투자지역 및 동 법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참조

26)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

다.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의 확보기능, 통관질서 확립의 기능, 세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지원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 관세채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시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수리를 받도록 하는 등 세관관리를 통하여 관세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모든 수입물품과 반송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통관된다. 이를 통하여 밀수출입을 방지하고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모든 수입물품, 환적화물과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집중적으로 반입한다. 그리하여 세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반출입 감시, 물품검사 등 세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수 있다.

넷째,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인 원재료를 보세상태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 또는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가공무역을 진흥하고 지원한다. 보세건설장은 산업건설 설비를 외국물품 상태로 사용하여 관세부담을 경감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 산업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지원한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자유지,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이 주된 목적이다.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주요업무와 수행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보세구역에는 존재하는 자율관리제도가 자유무역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고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시에도 보세구역은 세관허가가 필요하나 자유

무역지역은 필요하지 않다. 자유무역지역제도가 보세구역제도보다 다소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입주기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수월하다고 평가된다.

라. 경제자유구역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포괄적인 성격의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조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4) 우선적 적용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동법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3항).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동법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정의 필요성 및 동법 제5조의 지정요건을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동법 제5조)

항만 및 배후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이 일정한 화물 처리능력²⁷⁾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

27)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조(지정 요건)에서는 화물처리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

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물품의 반입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 시설²⁸⁾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어야 한다(동법 제5조 제3항).

(7)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허가(동법 제8조, 제11조)

자유무역지역은 각 구분별 관리권자가 나뉘어지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시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조 (지정요건)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가.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나.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나.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다.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나.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 다.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28)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통제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행령 제4조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어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입주를 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8)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동법 제10조)

입주자격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²⁹⁾(제1항 제1호),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³⁰⁾(제1항 제2호), 또는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제1항 제4호),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국제물류관련사업, 연료, 식수, 선식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동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7조 제5호) 등이다.

29) 시행령 제7조(입주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허가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30) 시행령 제7조 (입주자격)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외국인투자기준

특히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 중 특히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대한민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자로 본다.³¹⁾

31) 자유무역지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관세등"이란 관세, 부가가치세,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7. "관세영역"이란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9.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을 말한다.
11. "내국물품"이란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말한다.
12.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산물관련업종의 해당여부 (제조업종 등)

수산물을 가공, 냉동, 냉장 등 재처리, 포장, 수출의 각 단계의 산업이 자유무역지역법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서 어떤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산물 관련 업종의 경우는 그 개념상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지식서비스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인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제12호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다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별표 2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은 나열되어 있으나 수산업, 수산물류와 관련된 주요산업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자유무역지역법상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을 얻기 위하여 제조업(법 제10조 제1호 혹은 제2호)이나 물류사업의 입주근거인 제5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소결

근본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이 수산물 물류허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하여 보다 명확한 법상 근거가 필요하기에 자유무역지역법에 제조업종, 서비스업종, 물류 등 관련 정의규정의 재정립(제2조 관련)이나, 입주자격(제10조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9)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세의 감면³²⁾

32) 제45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입주기업이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시사점

자유무역지역제도는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필요한 수산물류허브의 개발 및 설치 추진 시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 자유무역지역 관련제도에 수산가공 및 물류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의 보완 내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검토 및 분석

1) 법의 목적

식품산업진흥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에 근거하여 수산물가공업, 수산물 관련산업 등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³³⁾

33) **식품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의2.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법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5]

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용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1]

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도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

① 13.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물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해양수산물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3조(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의4(수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이하 "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보수
 2. 수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수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 수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수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 수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19]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지원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동법 제12조 제1항).

또한 동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3호)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8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9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참여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의2).

3)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법 제19조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조성,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가공산업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법 제19조의4)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 (제19조의4 제1항 제1호),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동조 제1항 제2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 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동조 제1항 제3호) 등에게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장 설치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9조의4 제2항).

이와 같이 동법상에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는 있으나, 다른 지원책은 특별히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다.

5)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1) 제12조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조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만이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산식품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육성에 대하여는 주무부인 해수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해수부장관도 관련 종합계획을 제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지원책 보완 필요성

식품산업진흥법상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

출촉진 혹은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함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고, 만약 수산물류허브 사업을 자유무역지대에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 가능성도 역시 있기에 구체적 지원책이 확보를 통하여 투자 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검토 및 분석

1) 법의 목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³⁴⁾은

3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2011.4.4>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4.4]

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09.1.30>

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7.30]

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 ② 삭제 <2011.4.4>
-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4.4>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30>

⑦ 삭제 <2011.4.4> [전문개정 2009.1.30]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법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0.1.18>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법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

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4.4]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법 제25조(설치 및 운영)

-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4.4>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4.4>

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법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1.4.4>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11.4.4, 2013.3.23>

법 제28조(옴부즈만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1.4.4>

- ② 경제자유구역의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의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1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동법의 목적에서 적시하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등(제15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제15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1항).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3) 세제 및 자금 지원(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6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주택 등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즉,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르면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자금지원의 기준을 정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타 법률의 적용 배제(제17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보훈대상자지원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동조 제4항). 또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항).

5)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제5장)

한편,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는 등 외국어서비스의 지원(동법 제2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고(제21조),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제22조, 제23조).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제24조). 총주택공급 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출입국에 관한 특례로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24조의3,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6) 소결

경제자유구역법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조세 감면 및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유인책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검토 및 분석

현재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³⁵⁾이 계류 중이다(발의연월일:2013.12.15). 개정안에 따르면 그 제안 이유

3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2.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4.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④일반지주회사의

는 다음과 같다.

“.....(중략)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할 경우에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계열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원칙적으로 봉쇄됨.

따라서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다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만 한정하여 중소기업종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여 진성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인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2007.8.3>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목적과 경제력 집중 억제 목표 간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동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향후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이나, 만약 통과된다면 외국회사가 국내기업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의 관련사업 투자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물류 허브사업을 자유무역지대나 경제자유구역에 추진함에 있어서 동법률 개정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소결

1) 각 법의 적용 대상

이상과 같은 관련 법 및 제도의 분석을 기반으로 보면, 자유무역지역법은 주로 경제운영 및 그 장소에 관한 법률로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 운영 및 장소에 관한 법임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라는 주체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주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및 편의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은 국가클러스터와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경제 운영 주체에 관한 법이며 국가클러스터라는 공간적인 집약을 고려한다면 경제 운영의 장소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주로 경제운영주체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법은 적용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동 제도의 이러한 상호 호환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주요 목적이 주로 중국의 성장하는 수산물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구역 설정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역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허브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정책적으로 도모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산업 유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이들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

단, 내국인이 동 허브에 진출할 경우, 내국인이 동 허브에 투자할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인센티브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식품산업진흥법 상의 클러스터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여 내국인의 동 허브 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제도의 개선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4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동 허브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법 중에서 관련 조항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1) 자유무역지역법: 수산관련산업의 포함

관련 제도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지원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입주자격)와 이와 관련한 시행령 등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10조(입주자격)과 관련한 시행령 제7조(입주자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수산가공, 수산물류, 수산관련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해양수산부의 역할 부여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산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제도 중에서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서 내국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의 관할이 되기 때문에 수산분야를 전담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의 역할 부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조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수산식품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육성에 대하여는 주무부인 해수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해수부장관도 관련 종합계획을 제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3-1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 관련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현행법	개정필요사항(미출)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중략...한다.”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중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12조의 ③, ④, ⑤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 4 장 국내외 사례 분석

산업단지는 공장용지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그리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산업의 육성과 관련되어 개개의 법률들이 규정한 산업단지이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의한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전용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도 특정 산업이나 기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³⁶⁾ 이러한 개념 하에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식품클러스터도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다.

클러스터(Cluster)라는 것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와 허브(Hub)라는 것은 중심지, 중추라는 개념이고 단지(Complex)의 사전적 의미는 주택, 공장, 작물 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

36)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어사전.

루고 있는 일정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 중에서 특히 클러스터와 보세구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 시 제도적 혹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주요 사례

1) 지역농업 클러스터

2004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추진 방안 중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라고 정의하였다.³⁷⁾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은 사업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지원한다. 또한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 및 품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화된 농산물 생산의 지리적인 집적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과 관련된 유통 및 가공 등의 농산업 기반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하

37)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군특)」, 농림수산식품부, 2004.

고, 넷째, 추진주체가 존재하여 지역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하며, 다섯째,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³⁸⁾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사업비는 2005년 23,800백만 원에서 2008년 262,000백만 원으로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2005년 10개 시범사업단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2단계 지역농업 클러스터로서 경기 화성(웰빙 떡), 강원 홍천(한우), 충남 서산(생강), 전북 무주(산머루), 전남 영암(무화과), 경북 영천(와인), 경남 남해(시금치), 제주(馬 산업)등 22개 신규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에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

첫째,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이다. 즉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운영지원,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이다.

둘째, 핵심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즉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정비, 전략품목생산단지 현대화, 비농지 활용형 생산기반정비 등이다.

셋째,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지역연합사업, 공동이용시설,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농산물 이력추적제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넷째,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타 관련 농림사업이나 기술개발 등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를 유도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부지매입비,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비, 행사 경비에 대한 지원은 배제시켰다. 단, 클러스터 사업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 혹은 총 경상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부지매입비 제외).

38) 김정호 외,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2004.

지역의 농산업을 클러스터라는 혁신 주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존의 개별사업 중심의 투융자를 지역농업 조직의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³⁹⁾

(1) 추진배경 및 현황

규모가 영세하고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인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글로벌 식품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2007년에 ‘식품클러스터 조성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 추진 공모에 나선 5개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라북도로 확정하였다. 2008년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익산시 등 6개소의 입지 후보 중에서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지로 선정되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Food)과 ‘중심’, ‘도시’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폴리스(Polis)가 결합하여 세계 식품문화 도시의 중심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푸드폴리스’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기업 유치, 시설 관리 및 운영, S/W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2015년까지 총 5,535억 원을 투자하여 150여개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R&D·수출지향형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232만 m²)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로서는 126만 m² 규모인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식품시장이 2020년에는 6.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39)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안)」(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홈페이지 내용 참조.

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동북아 식품시장이 세계 거대 식품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⁴⁰⁾ 이러한 배경 하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은 앞으로 동북아 식품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글로벌 식품산업단지와 식품 혁신 창출형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식품 수출거점기지와 식품-농어업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발전방향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식품산업단지 조성

교통, 물류, 용수, 전기, 주거, 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국책연구소를 유치하여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투자·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금·주거래 은행을 지원하여 경영면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② 식품 혁신 창출형 연구산업단지 조성

3대 R&D 센터, 민간식품 연구소, 국책 식품연구소를 연계시켜 연구개발함으로써 저비용 고부가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건강식품 등 개인 맞춤형 식품 연구를 강화하여 식품기술과 IT 나노 로봇기술 등이 융합하는 식품 융복합 연구단지로 육성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식품연구소 등 공동 R&D·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③ 글로벌 식품수출거점기지 구축

종합보세구역(원료과세 유보)을 추진하고 수출·원료조달을 지원하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글로벌 식품가공 무역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40) International Data Group.

한 입주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고 마케팅활동을 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에 대해 지원할 것이다. 전담 물류회사 및 해외물류망 확보 등 새로운 식품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④ 농어업-식품산업 동반성장체계 구축

농수협 중심의 원료 계약생산, 공동구매 등 원료조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동 R&D 원료조달 및 마케팅 등 공생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체험·전시 및 축제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2) 제도적 인센티브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내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시·도의 지원규모도 달리 적용되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⁴¹⁾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조세, 토지임대료 감면 및 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제 면에서의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와 투자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입지 혹은 투자 보조금 중에서 지원받을 부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컨설팅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조기 MOU 투자기업 분양 인센티브, 세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즉 선도기업, 글로벌 식품기업 등 조기 입주 투자 MOU체결 기업에게는 ‘푸드폴리스 기금’을 부지 매입비 혹은 시설 건축비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권역 내에서의 입지 위치 선택권

41)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어사전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시·광역시 단체장 또는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에는 세제 혜택, 임대료 지원,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고 정의하였다.

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종합보세구역에 조성하여 수입물품, 환전물품,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가공하여 수출 시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시켜 물류의 신속화를 지원한다.

| 표 4-1 | 국내기업 인센티브

분야		내용
투자보조금	대규모투자	전북도: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 익산시: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
	일반투자	전북도: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 익산시: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원
고용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 원
	익산시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10만원~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 원
	익산시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 원
근로자 정착보조금	전라북도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중소기업 지원		시설, 운전자금, 창업자금 용자 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비, 마케팅 활동비 등

자료: www.foodpolis.kr

| 표 4-2 |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기업 인센티브

분야		내용
국세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등록·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관세 면제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되는 자본재 3년간 면제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 시
토지 무상임대		50년간 부지임대(50~100% 임대료 감면), 연장가능(최장 100년)

자료: www.foodpolis.kr

| 표 4-3 | 입지 및 투자 보조금 지원기준

분야		내용
산업입지 보조금	전라북도	▪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액의 50% 내에서 지원
	익산시	▪ 임대료 차액은 정상가의 50% 내에서 지원 ▪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의 30% 내에서 지원
투자 보조금	전라북도	▪ 미화 1천 달러 이상 투자, 투자금액 5%범위, 최고 50억 원
	익산시	▪ 10억 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
기타사항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월 50만 원)(예산범위 내) ▪ 컨설팅비용(투자금액 1% 범위안에서 최고 1억 원) ▪ 교육시설, 주택구입(예산범위내)

자료: www.foodpolis.kr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즉 투자자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여 투자유치 및 각종 법률지원, 입주에 관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진출 장애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 혹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식품산업단지 내에 핵심전략식품 단지, 식품 R&D Zone 임대단지, 지역식품(향토식품)단지 등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타 국가 식품클러스터와의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 표 4-4 | 식품산업단지 내 특화단지별 정책적 지원내용

분야	내용
핵심전략식품단지	- 푸드폴리스 기금 및 주거레 은행을 활용, 부지매입비·건축비 처리 용자 지원, 일부 임대단지 운영 3대 R&D센터 등 기업지원시설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
식품 R&D ZONE 임대단지	- 지자체에서 임대단지로 운영, 임대분양 선택 가능 - 푸드폴리스 기금을 활용, 연구소 건축자금 용자 지원 - 식품기능성평가센터 등 3대 R&D센터와 연계하여 연구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우선 적용
(가칭)한민족 식품단지	- 남북 합작 식품기업, 재외동포 식품기업 등 한민족 식품단지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을 민족산업을 육성 - 푸드폴리스 기금을 활용, 부지매입·생산시설 건축지원 및 근로자 고용·교육·주거 등에 편의 제공
지역식품(향토식품) 특화단지	전북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지역식품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식품 특화단지를 조성, 3대 R&D센터 등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

자료: www.foodpolis.kr

(3) 향후 계획 및 과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3년, 2014년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공사, 6개 기업지원 시설(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 센터, 파일럿 플랜트, 임대공장, 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2015년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연구시설, 기업 입주 등 본격적으로 가동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5,53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운영이 활성화 되면 농업 연계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투자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연구소 7개, 기업체 56개로 목표치인 150개 기업체와 10개 연구소 유치할 계획인데 비해 기업인 경우 유치가 목표치의 37%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지역의 글로벌 우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3)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⁴²⁾

감천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 확보하고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성한 21C형 통합 물류 무역 시스템 산업단지이다. 1991~2020년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3단계로 나뉘어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1999년 완료)에서는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와 국제 수산물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완료하였고, 2단계(2013년 완료)에서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를 조성하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였다. 3단계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조성만 완료한 상태이다. 앞으로 2020년까지 택배 및 수산가공시설, 복합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기지 배후지원적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수산물 종합배송·택배센터, 국제해양센터, Sea-Food 백화점, 원양역사관, Fish-Park 조성계획이었으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감안하여 배후지원시설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1) 운영 현황

원양어획물 전용부두는 원양어업의 전진 기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신속한 접안, 양륙으로 수산물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산물 하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수협중앙회, 원양업체 등 12개 업체가 출자하여 1991년부터 착공, 8년에 걸쳐

42) ‘감천항 개발계획’ 자료 참조.

1999년 11월에 준공하였다. 선박접안능력은 5천 톤~1만 톤급 선박 9척이 동시 접안 가능하다. 1999년 수산물 유통단지를 포함하여 국제 수산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에는 종합보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현재 총 30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수산물 유통가공단지는 수산물의 양륙·처리가공·유통의 계열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유통가공단지는 현재 냉동·냉장업 37개소(민자사업 21개소, 투자사업⁴³⁾ 냉동냉장시설 14개소, 공동이용시설 2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 조성 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과금, 재산세, 종토세, 양도세, 특별부과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 9월에 개장하여 현재 국제수산물 취급법인 2개, 연근해수산물 취급법인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는 827명, 그 중 중도매인은 142명, 산지유통인은 162명, 하역인력 277명 규모이다. 2012년 기준으로 거래량은 119천 톤, 거래금액은 2,023억 원으로 전국 14개 수산부류 공영 도매시장 중 거래물량 1위, 거래금액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주요시설로는 회관동, 도매장동, 냉동창고동, 활어보관동 등이 있다. 도매장동에서는 주로 원양 어획물의 공개경매를 진행하고, 2만 5천 톤급 저장능력이 있는 냉동냉장창고도 있다. 활어보관동에는 활어를 일시 보관하고 경매할 활어스톡장 등 28개 수조가 배치되어 있고 24시간 하역이 가능하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기지 조성의 3단계 사업으로서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이는 FTA 등 글로벌 수산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동북아 수산물류무역 거점도시 선점 및 수산가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또한 HACCP 기준에 적합한 현대화된 식품안전

43) 국비, 융자, 민자로 사업비 구성.

시설을 확충하고 수산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수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내에 위치하여 있어 원료 수급 및 보관, 물류 등 수산가공 공장 위치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제수산물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원양어획물 전용부두 뿐만 아니라 종합보세구역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냉장보관시설 및 주변 물류단지 내 냉동창고를 용이하게 이용이 가능하여 물류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 표 4-5 | 단지 내 주요 시설

구 분	주요 시설	
가공공장	어묵류	4개소
	건포류	16개소
	기타류	16개소
	절임류	20개소
	소계	56개소
연구지원시설	수산물종합연구소	HACCP 인증과 컨설팅, CCP관리, 제품개발 등의 지원
	포장디자인센터	공동브랜드와 업체 개별브랜드 컨설팅, 포장디자인 지원
	수출입정보센터	해외시장 개척, 상담회 개최, 국제 박람회 및 판촉 등 지원
	전시홍보실	입주업체 협의체에서 운영
기타시설	후생복지시설(식당, 복지후생관), 관리실, 기계/전기실, 주차장(승용차 295대, 화물 182대, 버스 5대 주차 가능)등	

자료: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 설명회’

동 단지는 연면적 83,951㎡, 지상 7층 규모로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가공공장 56개소, 수산물연구소, 포장디자인센터 등 연구지원시설도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전용부두도 보유하고 있어

One-Stop 가공수출이 가능해진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어묵류 1개소, 건포류 12개소, 기타 가공류 15개소, 절임류 16개소 총 44실 3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1차 입주 업체 선정 시에는 수산가공업체로 제한하였지만 2차 모집 이후에는 신규창업도 허용하였다. 시설사용기간은 최초 3년 시설사용허가 후 갱신 시 2년 허가, 연간 사용료는 매년 선납 방식을 취한다.

입주업체 신청 자격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 종목은 ‘수산물가공’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도 참여 가능하되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 수산물 가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참여하는 방식이다.

입주업체 선정방법으로는 공장종류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였다. 입주업체는 1사 1실을 원칙으로 하되, 1사 2실까지 허용하며 1사 2실 허용여부는 공장별 입주 업체수,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공장종류별 주요 생산품목을 제시함으로써 선정 시 선진화단지 내 품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였다.

선진화단지의 관리 운영은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입주업체 운영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가공공장 이외의 하역장, 공동창고, 입·출하 엘리베이터 등 입주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업체들이 자발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 표 4-6 | 가공공장종류별 생산품목

가공종류	생산품목
어묵류	어육연제품(튀김어묵, 찐어묵, 맛살, 핫바, 라면스프 등)
건포류	자건품(홍합, 마른멸치, 마른새우) 소건품(오징어, 문어, 명태) 염건품(굴비) 해조제품(다시마, 미역, 김)
기타 가공품류	조미가공품(훈제연어, 조미오징어, 알류, 생선까스, 조미김) 건강가공품(다시마환, 다시마스낵, 해조초) 가타가공품(천연조미료 등)
절임류	염신품(오징어 젓갈, 멸치액젓, 새우젓, 창란젓 등) 염장품(간고등어, 과메기)

자료: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 설명회’

| 표 4-7 | 주체별 관리 내용

관리주체	내 용
관리사업소	선진화단지 내 시설물 등 종합관리
민간 위탁 (관리사무소)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등 관리 - 기계, 건축, 전기, 방재, 정보통신 분야 - 청소, 방역, 조경 분야 - 경비, 방법, 주차관리, 청사 안내 분야 - 폐수 처리시설 등 관리
입주업체 운영협의회	입주업체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등

자료: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업체 설명회’

(2) 향후 계획 및 과제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2020년까지 3단계 조성사업 중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검역계류장 이전과 물류단지 배후시설단지 조성 과제가 많아 있다. 검역계류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R&D, 비즈니스 시설 등 기지 배후 지원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물류무역기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나아가 검역원 이전 부지에 수산물류·직거래 시설, 국립수산물식품

산업진흥원, 국제해양센터, 복합해양문화센터 등 시설 도입을 통해 Sea Food Valley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수산물류·무역기능의 집단화와 외국 유통자본의 국내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국제물류·무역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2013년 완공된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앞으로 국내 수산물가공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제품생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증대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중소 가공업체의 마케팅 능력 증대를 통해 수출 촉진을 도모할 것이다. 나아가 수산가공단지의 선진화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 시설을 완비하고 신뢰받는 수산가공단지로 조성할 계획이고 저비용, 고효율, 고부가가치형 수산가공단지로 조성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산물물류단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 업체는 국내 기업 중심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또는 파트너십 등 방식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시도해봤지만 초기에는 선진화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선진화단지 내 가공공장은 분양이 아닌 임대방식이고 작업장 면적도 제한되어 있어 자본력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경영환경에 대한 기피 현상이다.

한편,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내 6차례에 걸친 입주업체 선정에도 불구하고 44개소(총 56개소)만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입주업체 유치 시 애로사항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다. 입주 희망 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한 가공업체로서 입주 초기에 투자비용 2억~3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부담감이 있다. 둘째, 분양이 아닌 임대방식과 임대기간이 짧은 것도 입주 저조현상이 나타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설사용기간도 초기에 3년, 갱신 시 2년 허가인 방식이다. 중소 가공업체에 대

해서는 이러한 운영방식은 선진화단지가 가져오는 편익보다는 앞으로의 비용 증가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설비투자 지원금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수산물 가공업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은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는 좋으나 기업들의 수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 운영과정 중에서는 입주업체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업체들의 경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사례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이탈리아 등 식품선진국들은 자국의 식품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혜택과 구성요소가 다양한 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참고할 수 있을지 덴마크·스웨덴은 외레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등 식품선진국은 몇 년간 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여 왔다.

1) 덴마크·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덴마크와 핵심산업인 낙농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유럽연합 출범으로 인한 시장 개방 속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과 연구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네트

워킹을 형성하게 하였다. 스웨덴도 역시 전통적인 식품생산자,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 지역과 스웨덴 말뫼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이는 현재 세계 최대의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되었다.

외레순 클러스터의 스웨덴 스케오네 지역은 전통적인 식량 생산지역으로 농업발전에 유리한 토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식품생산 주요 국가이다. 또한 룬트 대학교, 코펜하겐 대학교, 덴마크 기술대학교 등 많은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동 클러스터 내에서의 연구과정은 농업 생산부터 최종 소비식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식품 관련 전반적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외레순 클러스터는 1990년대에 정부가 소규모로 지역식품의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현재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업이나 대학 등의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스웨덴과 덴마크의 협력을 중재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다. 외레순 클러스터의 참여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 연구·개발 기업, 제품화를 지원하는 공정 및 포장개발기업, 대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덴마크 기술대학, 코펜하겐 대학, 스웨덴 농업대학, 기능성 식품과학센터 등 14개 대학과 6개 전문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있다.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는 이탈리아 북동부지역의 평야에 위치하여 있다. 이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임과 동시에 경제환경 변화에도 역동적으로 대응해온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최대의 농업지역으로서 파르마 햄 및 치즈, 발사믹 식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산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1970년 이탈리아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지방 자치권을 강화시켰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농업, 수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와 중소기업들의 노력으로 혁신적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에밀리아로마냐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1974년에 ERVET 본부를 설립하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ERVET 본부의 주요 역할은 입주업체 운영의 기술지원,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 클러스터의 성과분석 및 정책 실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에밀리아로마냐 정부는 기업과 혁신 주체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RVET 본부에는 지역 기술이전센터(ASTER), 품질연구·인증센터(CERMET), 산업자동차서비스센터(DEMOCENTER), 공공사업수·발주 관리센터(QUASAP), 섬유정보센터(CITER), 농기계기술센터(CESMA), 건설산업·인증센터(QUASCO)를 설립함으로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ERVET 시스템이 실시하는 정책들은 더 이상 지역 생산체제의 양적 생산에서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클러스터에 적용시켰다.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들 및 협회와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역기술이전센터(ASTER)는 비영리 기구로서 각 연구소와 혁신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지역산업체에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의 사무국 역할도 하고 있다. 동 센터는 국책 연구기관, 대학교, 상공회의소, 기업협회 등 클러스터 주체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낙농업 혁신, 안전, 품질연구센터(SIQUILACA)

는 에밀리아로마냐의 첨단기술 네트워크와 지역 생산 체계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정활동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식품원료의 위생 품질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보급하고, 생산과정 관리 기법과 거래관계 관리 방법들에 대한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펼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이 지역 중소기업들은 네트워크 관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발전하여 왔고, 또한 지방 대학과 연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자생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업들 간의 상호 협력적 분업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전체가 하나의 ‘대기업’처럼 유기적인 생산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단위 회사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였고, 이런 전문성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기술과 기업 간의 분업체계를 통해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

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지역 내의 토마토, 햄과 치즈, 발사믹 식초와 같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전통적인 식품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을 토대로 식품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을 산업화시키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자기가 직접 혹은 조합이나 지역 내 소규모 식품회사를 통해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3) 중국 보세구 사례⁴⁴⁾

(1) 칭다오 보세구 사례

칭다오 보세구는 1992년 건립하여 현재는 자유무역항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보세항구(保稅港區)로 기능을 확대하였다. 무역 혹은 화물 중계(轉口)을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2012년 기준으로 보세구 내에 약 50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업종에 따라 무역 90%, 창고물류 5%, 제조업체(귀금속 등) 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기업 80%, 외자기업 20%가 차지하였고 외자기업은 주로 홍콩,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국가의 현지법인이다.

현재 보세구 내의 부지 이용이 포화된 상태이므로 식품, 수산 등 노동집약형 가공공장을 건립할 부지가 없는 실정이다. 보세구 내에 수산물 혹은 육류를 취급하는 냉동보관 업체는 4개(강성(港盛), 리안허화통(聯合華通), 중스(綜食), 린펑하이(林豐海))이다. 칭다오 보세구는 중국의 ‘회사법’에 부합되면 모든 업체의 입주가 가능하고 보세구 내에서 제공되는 혜택은 중국기업과 외자기업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초기자본금을 투입하는 것만 다르다. 즉 외자기업은 자본금을 몇 번 나누어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중국기업은 자본금을 일시불로(등록 시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만 다르다.

표 4-8 | 칭다오 보세구 기본 정책

	주요 내용
세수 정책	■ 해외 화물 보세구 내 반입 시 보세(관세 부과 보류) ■ 내수시장 공급 시 수입 통관 절차 실시하되 화물 상태에 따라 세금 징수 ■ 중국 국내 화물은 보세구역 진입 즉시 수출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금 환급 실시 ■ 보세구 내 기업 간의 화물 교역은 부가세 및 소비세 면제

44) 출장조사 내용 참조.

| 표 4-8 | 칭다오 보세구 기본 정책(계속)

	주요 내용
세관관리감독 정책	▪ 보세구 내의 화물은 자유로이 유통가능 ▪ 보세항구와 기타 국가 간의 화물을 대상으로 수출입 시 수출입 허가등록 관리할 필요 없음 ▪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서 신고한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면제. 바로 선적가능 ▪ 해외 화물을 보세항구에 반입할 때 검역검사부문에서는 검역만 실시함 ▪ 보세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자통신 검사 혹은 항만국 검사만 실시 ▪ 보세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24시간 내에 온라인에서 세관신고 및 입출항 정보 신청을 할 수 있음 ▪ 화물 통관 수속은 전자시스템으로 관리 ▪ 화물 수입 시 사전에 세번, 가격, 원산지 등 정보를 미리 신고할 수 있음 (통관시간 단축될 수 있음)

자료: 칭다오 보세구 관리위원회 내부자료

칭다오 보세구역의 운영 시스템은 區(보세구), 園(물류단지), 港(항구)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칭다오 보세구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무역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12.5 경제발전계획’ 말 즉 2015년에 생산 가치를 1000억 위안(약 18조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 물류 중심지로 거듭남으로써 2015년까지 물동량을 1800만 TEU, 중계무역 물동량은 300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칭다오 주변 지역(市(市))을 보세구 혹은 보세항구로 지정하여 보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칭다오 보세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칭다오 주변 지역의 국영기업 또는 일반기업과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 즉 부지를 매입하여 가공공장을 건립한 후 원료 수입 시 칭다오 보세구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 앞으로 주변 지역의 지방정부 혹은 기업과 더욱 다양한 협력

방식을 모색하여 보세구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수익성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다.

【표 4-9】 칭다오 보세구역별 정책 비교

	보세항구	보세구	보세물류단지	수출가공구역
주요 기능	물류, 대외무역, 국제중계무역, 상 품전시, 선박 검 사 및 수리, 가공 제조, 항구작업	창고물류, 대외무 역, 가공제조, 상 품전시	창고물류, 대외무역	가공제조
세수 정책	■ 중국 내의 화물이 동 구역에 반입 시 수출로 인정되므로 세금환급 실시 ■ 구역 내의 화물 교역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 중국 내의 화물이 동 구역에서 반출 시 세금환급 가능	■ 중국 내의 화물이 동 구역에 반입 시 수출로 인정되므로 세금환급 실시	■ 중국 내의 화물이 동 구역에 반입 시 수출로 인정되므로 세금환급 실시

자료: 칭다오 보세구 관리위원회 내부자료

(2) 다렌 보세구 사례

다렌 보세구는 다렌시 신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경제기술개발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관할면적 251.3km²로서 보세구, 다야우완보세항구(大窯灣保稅港區), 수출가공구역, 자동차물류단지, 전용항만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보세구역 내 입주 업체는 5000여개, 그 중 800여개 업체는 외자기업(한국기업 97개, 일본기업 400개, 미국 및 유럽 303개)이다. 수산기업은 총 135개 업체에 달한다(외자기업 15개, 중국기업 120개)(가공업체 10%, 무역업체 90%). 보세구 내에 수산물 혹은 식품을 취급하는 3대 냉동창고 업체는 이두지파(毅都集發), 형푸(恒浦), 장자도(獐子島)⁴⁵⁾이다.

| 표 4-10 | 다롄 보세구역별 일반 개요

	보세구	다야우완보세항구 (大窯灣保稅港區)	수출가공구역
설립연도	1992. 5	2006. 8. 31	2000. 4. 27
면적(km ²)	1.92	6.88	1.5
주요 기능	국제무역, 보세창고, 보세가공, 보세상품전시 등 기능을 가진 보세구역	물류, 항구, 가공 기능을 가진 보세구역	보세가공, 물류 기능을 가진 보세구역

자료: 다롄 보세구 관리위원회 내부자료

보세구는 가장 먼저 설립하였기 때문에 제도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세항구는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역의 세수정책과 각공 혜택을 모두 갖춘 구역이다. 즉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보세항구 순으로 혜택이 많다.

다롄 보세구는 구역 내의 냉동능력을 2013년 23.5만 톤, 2015년 32만 톤, 연간 취급물량 105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최대 콜드체인물류기지 조성을 목표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외자유치 시 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제도적 혜택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는 사업별로 특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금액이 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45) 장자도 냉장창고는 건립 중에 있고, 2014년 완공되면 콜드체인물류센터로 활용.

| 표 4-11 | 다렌 보세구역별 인센티브(세금정책) 현황

		보세구	수출가공구역	보세항구
세금정책 환급정책	화물 수출 시 세금 환급	출국 후 환급	구역 내 반입 후 환급	구역 내 반입 후 환급
	자체용 시설에 대해 세금 환급	없음	중국 국내에서 생산한 기계, 설비, 부품 등 사용 시 환급	구역 내 기업 자체 사용 중국산 기자재, 설비 등에 대해 수출화물로 인증하여 환급 수속 처리
자체용 시설 세금 면제		자체 사용 생산설비, 건축자재, 장비용 부품 등 수입 시 세금 면제	보세구와 일치	보세구와 일치
구역 내 세금 징수 관련		구역 내 화물유통에 대해 일반적인 세금 징수 관리법에 따라 관리	구역 내 화물 이전에 대해 부가세와 소비세 면제	구역 내 화물 이전에 대해 부가세와 소비세 면제
수입 세금 완납		내수시장 공급 시 완제품 중의 수입부품에 대해 세금 징수	완제품 기준으로 세금 징수	내수 시 화물 반출 시 실제 상태에 따라 세금 징수

자료: 다렌 보세구 관리위원회 내부자료

중국의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물류창고 건립이 중국 내에 급속도로 확대해짐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중계업무 물량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현재 칭다오, 다렌 보세항구 내에 건립 중 또는 기존 냉동창고의 절대적인 개수는 적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므로 화물 중계업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물량확보 면에서 경쟁구도를 이룰 것이다. 보세구역 혜택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해 인건비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칭다오와 다렌은 한국에 비해 중계업무에서 가격우위를 가지고 있다.

3. 시사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덴마크, 이탈리아 식품클러스터 사례와 중국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첫째, 연구와 산업을 이어주는 인센티브이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식품클러스터의 인센티브는 주로 연구개발과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경우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노하우로서 다른 국가의 동업종과의 차별성을 연구를 통해 고차상품화함으로서 상품의 차별화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품클러스터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일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이익을 우리 것으로 하기에는 정책 목적이 장기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둘째, 산업구조적 인센티브로의 전환이다. 중국의 경우는 낮은 인건비와 경제성장을 무기로 하여 연안의 보세구 지역에 외자를 유치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지원은 주로 특별조치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 연구의 예산과 시간에 한계가 있었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세금 혜택은 주로 수출입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인센티브는 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 진출하는 외자기업들은 과거 중국의 낮은 인건비로 인한 기업 비용의 절감보다는 앞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에 따른 매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자체가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한 사례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유럽 등의 우수한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연구와 산업의 연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력을 인센티브를 산업에 제공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장기

적인 목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수산분야의 글로벌화에 닥친 문제는 향후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을 그보다는 8년 이내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국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식품 클러스터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이를 대신할 중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동 허브의 목표는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으로 현재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역시 중국의 시장성에 기반을 둔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허브의 육성을 위해 내외국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관련 제도에서 인센티브 강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FAO의 2021년 세계 수산물 교역 전망을 참고하면, 2011년 대비 2021년에는 약 27% 정도 수산물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수산물 교역량은 동 기간 대비 오히려 4.3%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수입이 6.7%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출이 25.0%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수산물 수급은 수입의존형으로 향후 수입에 더 치중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의 수산물 시장 성장에서 한국은 수출에 의한 국익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은 세계 수산물 교역규모에서 2011년 2.2%를 차지하던 것이 2017년에는 1.6%, 2021년에는 1.3%로 무려 40.0%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FAO의 전망에 따른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에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우리의 높은 수산물 소비에 따른 국내 수급 균형이다. 어식 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가격은 국제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국내 수급용으로 이용된다.

둘째, 글로벌 수산물 소비문화는 수산가공품 중심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가공 수준은 중국과 베트남 등 세계의 주요 수산물 가공국에 비해 인건비,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다. 우리의 인건비 및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높아 글로벌 수산가공기업들은 개도국에 설비를 투자했고, 이 결과 중국 등은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중계가공무역국으로 정착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수산가공업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수산시장의 확대·성장을 우리의 국익으로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수산

가공업 육성책을 펼친다 해도 2021년까지의 글로벌 수산시장 성장에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어 이러한 운영 노하우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산가공업체는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일부 수산가공업체는 글로벌 수산시장의 확대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로서 글로벌 시장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냉동냉장창고 중에서 수도권과 부산에 입지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의 개별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있는 축에 속한다. 또한 부산의 감천항에 입지한 냉동냉장창고는 동북아 수산물류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류의 노하우(품질관리, 보관, 하역, 선별 등)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 등과 같은 국제 행정처리 기능 역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하우를 살린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점으로 첫째, 동북아 최상의 물류입지는 한국이라는 점이다. 동북아 최상의 물류 입지로서 수산분야의 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 4국(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중국은 가공 생산국, 러시아는 원료 생산국, 일본의 최종 소비국의 역할에 더해 한국은 물류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타깃을 향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에 맞추어야 한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2000년 24kg/인에서 2011년에는 33.3% 증가한 32kg/인이었다. FAO 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35kg으로 2011년 대비 약 9.1% 늘어나고 2012년까지는 37kg/인으로 21.9% 늘어날 전망이다. 이 물량을 보면, 2021년에는 2011년 대비 약 750만 톤, 2017년에는 450만 톤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2021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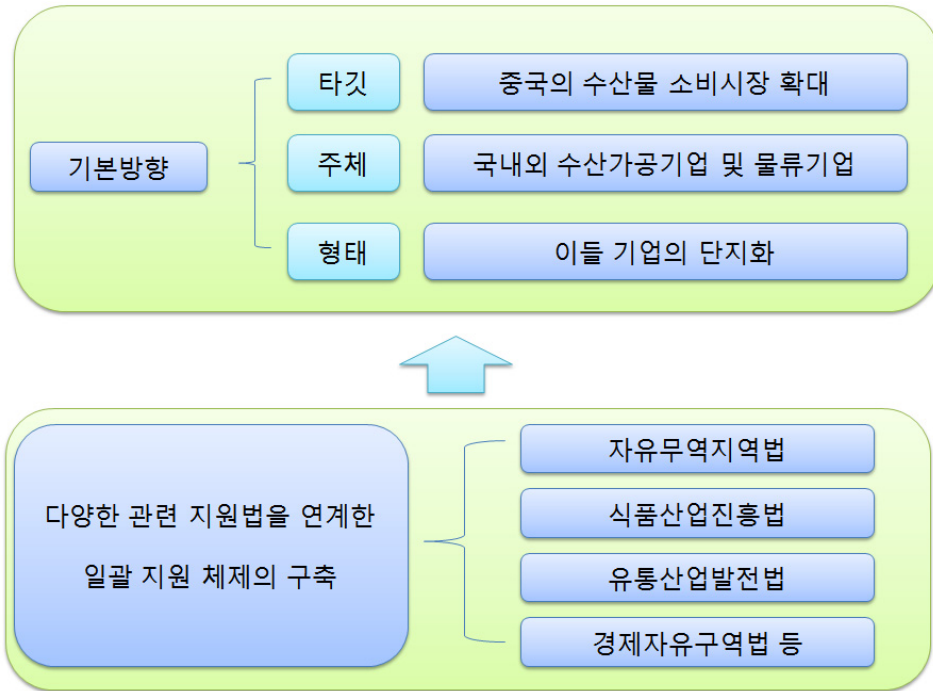
FAO의 지구촌 수산물 공급량은 약 2,300만 톤이 늘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약 33%가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셋째, 유수의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향후 타깃 국가는 중국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는 전세계 공급량 전망의 30% 이상이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 대해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린하베스트는 대중국 연어 수출, 일본의 닛스 이와 마루하니치로는 일본의 고급수산가공품(건전복, 건해삼 등), 러시아의 수산기업들은 명태, 유럽의 수산기업들은 기존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EU로 재수입하던 전략에 중국 현지 판매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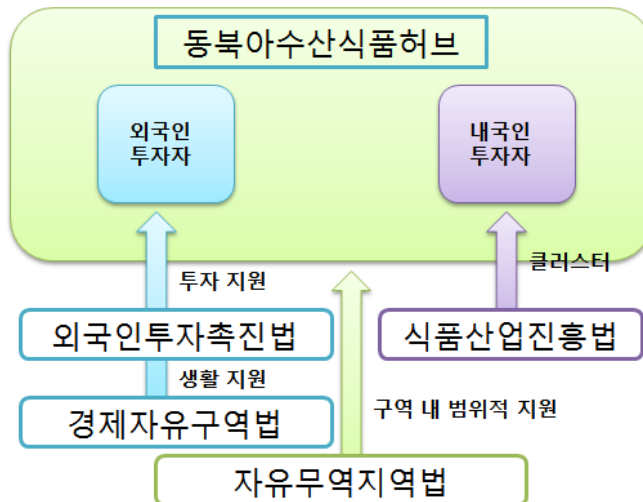
따라서 동 과제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동북아 주변국에 비해 수준 높은 정책을 지원하는 일정 지역에 내외국인 수산식품가공 및 물류기업들이 입지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존의 장기적인 수출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중단기적인 기대효과를 도모하여 우리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관된 각종 지원책(자유무역지역법, 식품산업진흥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수산가공기업(클러스터 포함)을 육성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며,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수산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익을 국익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글로벌 수산물류 및 식품기지로서의 기능과 지원체제를 확보하여 동북아 진출을 노리는 유수의 글로벌 수산기업을 국내로 수렴한다.



| 그림 5-1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 제도의 관계



| 그림 5-2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제도의 연관성

이를 위해 적절한 입지 요건으로서는 국내외로의 반입 및 반출이 용이한 항만 배후부지가 적절하다. 이에 대한 적지로서는 감천항 원양단지, 인천신항 배후부지, 평택항 배후부지, 광양항 배후부지가 대상지로서 적당하다.

【표 5-1】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대상 지역

지역	특징
감천항 원양단지	· 원양어획물 보관 · 세계 최대의 냉동냉장단지 · 수산물 최대 소비국 일본과 인접 · 러시아 명태 자원의 수집지 등
인천신항 배후부지	· 한중 및 한중일 FTA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 기대 · 중국과의 인접성 및 기존 물류 루트 · 최대 소비지인 서울 및 수도권 인접 · 신항 LNG 냉열을 이용한 냉동냉장단지 고려 중
평택항 배후부지	· 한중 및 한중일 FTA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 기대 · 중국과의 인접성 및 기존 물류 루트 · 최대 소비지인 서울 및 수도권 진입 용이 (서해안 고속도로) · 평택 LNG 냉열을 이용한 냉동냉장단지 등 고려 중
광양항 배후부지	· 식품업체 일부 입지 · 중국 남부 및 동남아와의 연계성 · 광양항 배후부지의 농산물 물류단지 계획 포함

여기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대한 지원책과 기존의 클러스터 및 10대 전략품목과의 관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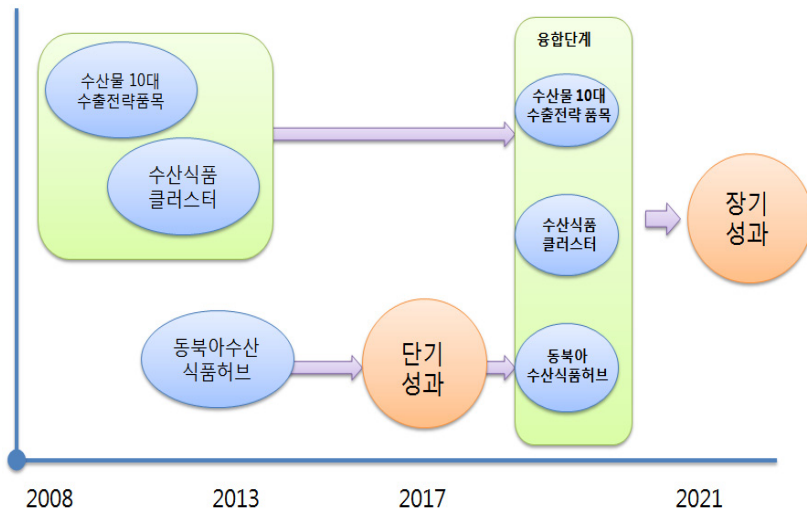
첫째, 이들 정책은 상호 분리된 정책이 아니다.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와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정책은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연계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는 외국인 수산관련기업 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되므로 이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수산물 수출 10대 품목 역시 이와 관련한 기업, 생산자, 클러스터 등이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입지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

호 연계성을 가지며, 수산물 수출 10대 품목 정책의 하드웨어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둘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클러스터 육성 정책과 수산물 10대 전략품목의 성과가 장기에 걸쳐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산시장의 성장에 단기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클러스터 육성책과 10대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의 보완적 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이다.

셋째, 그러나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클러스터 육성 정책과 수산물 10대 전략품목의 보완적 성격이기는 하나 지원책으로서는 다수의 법적 체계에 근거한 일괄적인 정책으로서 지원되는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는 2010년대 중반까지의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수산물 10대 수출전략 품목 정책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육성 정책과 융합되어 이들의 장기적인 성과에 기여토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 그림 5-3 | 관련 정책간의 성과 흐름도

2. 정책 제언

1) 정책 연구와 투자유치 계획

동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과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수산분야의 창조경제 정책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에 있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동 과제에서 제안코자 하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다양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고찰 외에도 다음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대대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수요 주체의 확인이다. 새롭게 의원입법에 올라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수산식품물류허브와 같은 특정된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만큼의 투자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서 1천만 달러 이하의 집배송센터(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것)라는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수요 주체 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단의 설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유치설명서가 필요하다. 외국의 투자를 수산식품허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현실적인 근거에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치에 따르는 지원책, 그러한 지원책이 인접 경쟁국에 비해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투자 유치에 따른 수요자의 이익 등을 포함한 정보가 실려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단이 설립되어 해외의 글로벌 수산기업을 방문 혹은 초대하여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따라서 동 과업과 관련해서는 투자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투자설명서 작성과 직접적인 투자설명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표 5-2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에 따른 정책용역 및 투자유치단 일정계획

단위: 천만 원

	2014			2015			2016			2017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정책용역	30											
투자설명 자료 작성												
투자유치단 추진 운영 - 대외 대응팀 - 대내 대응팀												
투자설명회					3	3	3	3	3	3	3	3
수산식품허브 설립							설립			운영		

2) 관련법 제도의 상호 활용

동 과제에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육성과 관련한 제도는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이다.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참여 주체는 국내외 수산식품 관련 기업(가공, 물류, 생산 등)으로 함에 따라서 이상 검토한 4개의 제도에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식품산업진흥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하여 이 4가지의 법들은 구역적으로도 지원의 범위가 다르다.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는 데

따른 지원법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경제활동 외에 생활권에 대한 지원(예, 병원, 학교 등)이 주이기 때문에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종사하는 외국인 생활권에 대한 지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혹은 그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지만,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클러스터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농수산업 생산자나 그 단체 혹은 기업과의 그룹(클러스터)을 형성했을 때에 지원되는 법이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성격과 그 범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관련 법(4가지)과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인접한 중국의 수산식품허브 육성책은 보세구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목표대상국이 향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때, 중국의 보세구 지원의 정도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책 지원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내 관련되어 있는 법(현재, 4가지)에서 가장 지원 정도가 강한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함과 동시에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참여 가능한 국내외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이들의 생활(특히, 외국인의 한국 현지 생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4가지 제도는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설립과 육성에 있어서 첫째,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연계성을 일괄적인 행정체계와 조직 내에서 서비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3 |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국내제도간의 주요특징 비교

구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 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목적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제조업의투 자유치	지역산업육성을위 한투자유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및법률여 건조성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좌동	좌동	좌동
입주자격	내·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지 원 체 계	조 세 감 면	-국세:법인세·소득 세 3년간 100 %,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3 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국세:법인세·소득 세 3년간 100%, 2 년간 50%감면 -지방세: 취득세·등 록세·재산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지방 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관 세 부 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업단지조성시개 발부담금·공유수지 면점유료·농림지 조성비 면제	관세·특소세·부가세 투자신고후 3년 이 내에 도입되는 자 본재 100% 면제	-
	준 조 세	-	-	-
	노 동	-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행 정 지 원	원스탑서비스	산업단지공단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기 타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자금지원/임 대료 감면	임대료감면/분양가 인하차액보조(지불)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제한/생활환경 시설 지원
지정사례	마산/익산/군산/대 불/부산/광양/인천	사천/오창/현곡	구미/여수/오송	부산진해/평양/인천

3) 제도 개선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담을 수 있다.

첫째, 식품산업진흥법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앞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구축과 육성을 추진하는 데는 4개의 주요 관련법이 존재한다. 이는 다시 말해 정책적으로 주요 관할 부처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담당하며, 식품산업진흥법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식품산업진흥법은 수산식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역할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장의 제도 개선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식품클러스터 및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나머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련 정책 및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산분야만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에 광양항 배후단지, 인천신항 배후단지, 평택항 배후단지 등에서 농수산물과 관련한 산업 유치에 관심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법에서 농수산식품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동 허브의 지정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동법에서도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동 허브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지 그 수요가 파악되어야 한다.⁴⁶⁾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와 관련한 외국인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일정 수준의 수요를 파악한 후에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위한 내용이 동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 5-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선 방향

법 조항	기존	개선
시행령 25조의 1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중략)...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생략)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생략)	수산분야의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에 있어서 수산가공공장의 투자금액 수준을 미화 3천 달러 이하 수준에서 설정
시행령 25조의 3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중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생략)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생략)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생략)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생략)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생략)	수산분야의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에 있어서 수산가공공장의 투자금액 수준을 미화 1천 달러 이하 수준에서 설정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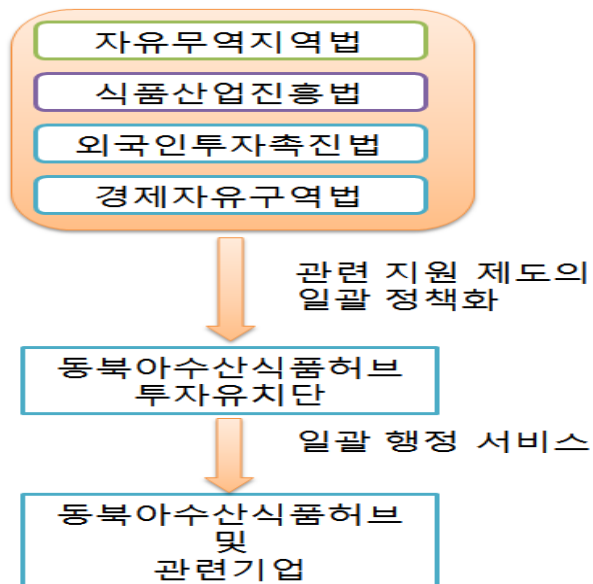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항에서는 제조업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식품제조업(수산가공업)의 공장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46) 기획재정부와의 인터뷰 내용임.

다. 그러나 수산가공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이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수산물 유통 및 물류와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앞의 내용과 같이 수산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일괄 행정 서비스 체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4개의 제도에 근거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부처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동 허브에 입주하게 되는 내외국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의 행정기관을 전전하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림 5-4 | 관련 제도의 일괄정책화와 행정 서비스

따라서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를 구축할 경우에는 이 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사업자를 위해 일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동 구역 내에 중앙 및 지자체의 일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다수 부처의 지원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합 수렴하여 사업자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정호·박문호·김태연,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6, 2004. 12.
- 김정호·박영범·김연민·정기수·김경환·임성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
사업 추진실태 조사』, 농림부, 2005. 12.
- 김정호·박준기·김영생·이병훈,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 농림부,
2005. 12.
- 김학소·성숙경·김우선·김운수·이주호 외 17명,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한국석유공사, 2008. 12.
- 민경택·김정호·석현덕, 『산림·산촌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농
림부, 2005. 12
- 박문호·한혜성, 『하동군 녹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하동군농업기
술센터, 2005. 12.
- 박문호·박시현·황의식·김광수·김정호·오형은·정남식, 『상주시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상주시, 2011. 12
- 박석두·오내원·최지현·김창호, 『국가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농림
수산물식품부, 2011. 2.
- 백현태·김배성·이용연, 『순창장류 농산업클러스터 구축 연구』, 순창군 장
류연구사업소, 2007. 12.
- 석현덕·김영단·김현근·김성주·윤범석, 『품목별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산림청, 2009. 12.
- 이성우·이주호·김찬호·김근섭·오연선·김성야·김진경, 『광양항 농산물
물류허브 추진전략 연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11. 3.

- 이시욱 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2010. 12.
- 이정희·황성혁·조영상·구자성·박인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2010. 12.
- 최성근·윤현석·오일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법제처, 2003. 9.
- 최성애·홍현표·마창모, 『수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연구 2008-15(기본), 2008. 12.
- 장홍석, 「日本も冷凍冷蔵倉庫産業の構再編と経営行動に関する研究」, 박사논문, 홋카이도대학, 2004. 3.
- 장홍석 외,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냉동냉장업의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물식품부, 2008. 6.

<국외 문헌>

-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OECD-FAO, 2012.

<인터넷 자료>

- 냉동냉장수협(<http://www.n-suhyup.co.kr>)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통계연감. 각 연도.
- 러시아연방통계청, 중앙통계 데이터베이스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백서』, 2012.

FAOSTAT(<http://faostat.fao.org>)

FAO(www.fao.org)

FAO, Fishstat J

UN National Statistics Division 홈페이지 (unstats.un.org)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013年 12月 29日 印刷

2013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김 성 귀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화

02-2105-2700 FAX : 02-2105-280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 · 印刷 / 한성애드컴 02-2266-6559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